

IPTV법 및 시행령 해설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이해-

2009. 3.

서 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핵심인 IPTV를 활성화하여
국가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미디어 빅뱅'의 융합 패러다임으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통신의 영역 구분 없이 모든 미디어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전달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방송과 통신서비스 시장을 통합하여 혁신적 융합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IPTV가 있습니다.

IPTV는 초고속 인터넷 망을 통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간 방송콘텐츠, 주문형 비디오, 문자메시지, 전자상거래, 게임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양방향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IPTV 서비스는 기존 방송과 통신의 단순 결합을 넘어 사회·문화적 변화와 산업·경제적 발전을 이끄는 新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이러한 세계적 변화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IPTV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이 제정되었고,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에게 IPTV법을 보다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하여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해설서가 IPTV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유익하게 활용되어 IPTV 서비스가 조기에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출현되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시 중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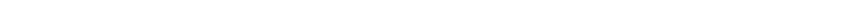
I. 제정 배경 및 IPTV의 개념	6
1. 제정배경 및 의의	6
2. IPTV 기술설명 및 개념정의	8
II. 추진경과	13
1. 법률제정 추진경과	13
2. 시행령 추진경과	18
III. 법률 및 시행령 주요내용	20
1. 법률 및 시행령의 구성	20
1) 개요	20
2) 주요특징	24
3) 법률의 구성	25
4) 시행령의 구성	28
2.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30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 개요	30
(1) 정 의	30
(2) 사업 분류	36
(3) 사업자 분류	40
2) 사업의 허가	42
(1) 사업권역	42
(2) 진입규제	46



(3) 소유규제	55
(4) 겸영규제	60
3) 공정경쟁의 보장 및 촉진	62
(1) 회계분리	62
(2) 경쟁상황평가	65
(3) 시장점유율 제한.....	69
(4)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73
(5) 이용자보호(이용약관, 요금규제 등)	83
(6) 금지행위	87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94
(1) 콘텐츠 발전시책	94
(2) 콘텐츠 동등접근.....	97
(3) 방송프로그램의 구성·운용.....	100
5) 사업의 운영·관리	121
(1) 사업의 휴·폐지	121
(2) 사업자 출연(기금출연 등).....	124
(3)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127
(4) 벌칙 등.....	131

【참고자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시행령 2단 비교표	137
------------------------------------	-----



제정 배경 및 IPTV의 개념

1. 제정배경 및 의의

◎ 배경

- ▶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세계적 추세에 IPTV법 제정의 근본적 배경
 - 방송통신융합을 반영한 서비스인 IPTV는 2004년 이후 세계적으로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
- ▶ 우리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부응할 것이 요구되었으나,
 - 당시, IPTV와 같은 방송통신융합 신규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확보되어 있었고 IPTV 도입 논의도 2004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었음
 - 이는 법체계가 방송과 통신을 별개로 규율하였으므로 IPTV를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기 때문
 - 방송법 혹은 융합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방송위와 정통부간 규제 관할 논란 등
- ▶ 그간의 논의를 정리한 산물이 2007년 12월 제정된「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 ※ IPTV를 둘러싼 논의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고, 이러한 논의는 실제 법제화 과정에서도 반영되어 2007년 당시 IPTV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 제출된 법안이 7개에 이르기도 함
 -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제공과 발전,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의 세계적 선도를 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도입기반을 법제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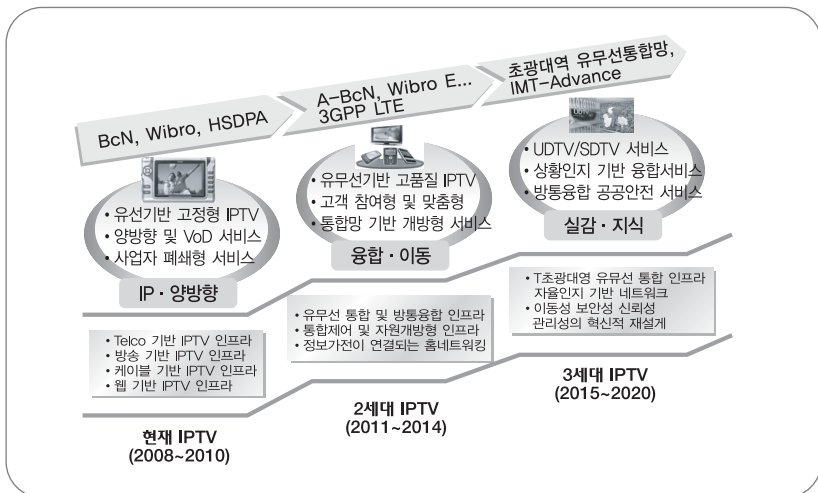
◎ 의 의

- ▶ IPTV법은 방송과 통신의 대립적 구조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융합의 성격을 지닌 서비스를 최초로 법제화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 ※ IPTV 도입 논의 시점부터 법률 제정까지 약 3년, 사업자 허가까지는 약 4년 소요
- 종전에는 방송서비스는 「방송법」에 따라, 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제하여 왔으나, 방송-통신의 경계영역에 속한 대표적인 융합서비스인 IPTV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제도체계를 제시
 - ※ IPTV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망의 고도화에 따라 기존 통신과 방송의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사업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의 새로운 혁신서비스
- ▶ 동 법은 방송과 통신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법제적 토대를 마련
 - 방송-통신의 구분에 따라 매체별로 사업자를 분류하던 그간의 방식에서 벗어나, IPTV 사업을 IPTV 제공사업과 IPTV 콘텐츠사업으로 분류하여 각 계층별 특성에 따라 규율하는 방식을 지향
 - 또한, 콘텐츠 동등접근, IPTV사업자간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등 방송통신 융합의 제도적 기반 제공
- ▶ 아울러, IPTV법 제정이후 기구 측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발족하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방송통신융합이 본격화될 수 있는 체제가 완성되었으며,
 - 이에 기반하여 2008년 9월 3개 IPTV사업자를 선정, 2008년 11월부터 상용서비스를 개시

2. IPTV 기술설명 및 개념정의

◎ IPTV(Internet Protocol TV) 개념

- ▶ IPTV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IP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TV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 즉, IPTV는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실시간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지상파, PP채널 등) 및 다양한 양방향 통신서비스(VOD, 문자메시지, 전자상거래, 게임, 노래방 등)를 복합적으로 제공
- ▶ 현행 IPTV 서비스는 고정형 IPTV로 기초적인 양방향 TV 및 VoD 서비스 위주
 - 차세대 IPTV는 Advanced BcN, 고속 이동기술을 바탕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넘는 초고화질, 맞춤형 실감현실 서비스 전망



◎ IPTV 서비스 특징

▶ IPTV는 기존의 케이블방송처럼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VOD, 채팅, 쇼핑, banking 등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했던 다양한 서비스를 TV 매체 등을 통해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쉽고 간편하면서 안전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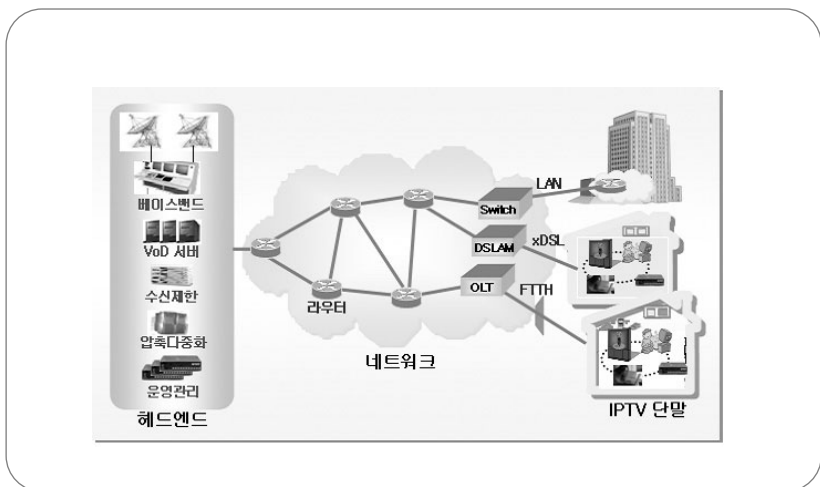


- ▶ 인터넷을 이용한 양방향성, 이용자 참여와 선택 허용, 콘텐츠 구성의 다양성·무한성, 창의적 응용서비스 발전가능성 등이 특징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생활정보 등 수많은 양방향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에 연결된 셋톱박스과 TV화면을 통해 볼 수 있게 됨
- ▶ IPTV는 실시간방송, 주문형비디오(VOD)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통신·방송서비스에서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융합형 신규 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IPTV 공교육·영어교육, IPTV 민원발급 등 IPTV 공공서비스와 IPTV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및 응용서비스의 개발 및 활성화
- ▶ IPTV의 특성상 채널 수용능력이 매우 크므로 보도, 교육, 교양, 오락, 문화, 종교, 역사, 지역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콘텐츠의 문화적 다양성 구현이 용이함

- ▶ 과거 수동적인 수용자 입장에서 UCC, PCC(Proteur Created Contents), 개인 미디어 등장 등 이용자 개개인이 콘텐츠 제작·유통 등에 있어서 이용자의 참여 확대를 촉진
- ▶ 인터넷 기반으로 PC보다 편리한 접근성, 대화면·고화질 디스플레이 이용 등 이용환경이 우수하여 다양한 계층의 콘텐츠 수요 확대 및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
- ▶ HD급 동영상 등 고품질의 영상콘텐츠를 전국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프리미엄망, 광가입자망(FTTH), 광랜 구축 등 네트워크의 지속적 고도화를 위한 투자 유발
- ▶ 과거 제한된 방송채널(케이블, 위성방송)과 달리 IPTV의 도입으로 콘텐츠 제공 통로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기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인터넷 콘텐츠사업자(CP)에게 신규 시장 제공

◎ IPTV 시스템 구성 및 기술

- ▶ IPTV 시스템의 구성은 헤드엔드 시스템, 네트워크 및 단말장치로 구성



- 헤드엔드 시스템 (Head-End system) : 원본 방송콘텐츠를 취득·가공(압축·다중화, 암호화, IP패킷화), 편성하고 가입자 관리, 과금 등 서비스를 제어하는 기능 수행
 - ※ 베이스밴드(Baseband system), 압축다중화, VOD 시스템, 데이터방송 시스템, 보안 및 운영 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
- 네트워크(Network) : 헤드엔드와 단말간의 IPTV 콘텐츠 전달, 서비스 제어, 전송품질(QoS/QoE) 제어 등의 기능 수행
 - ※ 백본(Core, Edge)망, 액세스(Access)망 구성을 위한 라우터·스위치 등으로 구성
- 단말(Set Top Box) :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STB 장치로 영상/음성 복호화, 수신제한, 프로그램 정보 및 양방향 데이터 방송 서비스 제공
 - ※ 미들웨어, 보안, 네트워크 접속,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및 웹브라우저 등으로 구성

〈IPTV 시스템 구성요소별 기능 및 주요적용 기술〉

구성요소		주요기능
헤드 엔드 (H/S)	베이스밴드 시스템	• 방송신호 수신, 분배 및 모니터링
	압축다중화	• 수신한 영상신호의 압축, 부호화, 다중화, 및 IP 패킷화
	VOD 시스템	• VOD 서비스 제공, 일시정지/빨리보기 제공
	데이터 방송 시스템	• T-commerce등 각종 양방향 부가서비스 구현
	수신 제한 시스템	• 실시간 채널 암호화, VOD 콘텐츠 암호화 및 시청 제어
	EPG 서버	• 방송 편성정보 제공
	운영 관리 시스템	• 편성/콘텐츠/계약/상품/가입자 관리 등
네트 워크 (N/W)	백본망장비	• 대규모 멀티캐스트 지원, 품질제어 기능
	유무선 액세스장비	• 멀티캐스트, 이동성 제어, 품질제어, 접속 제어
단말 (STB)	미들웨어	•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 제공
	복호화기	• 압축 전송된 영상/음성 복원
	네트워크 접속	• 네트워크 접속 및 멀티캐스트 기능 지원
	수신 제한 기능	• 시청 권한 제어 및 콘텐츠 보호
	웹 브라우저	• 웹 기반 IPTV 서비스 제공

◎ IPTV 기술기준

- ▶ **제공사업자 설비** :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한 제공사업자 설비기준
 - 전원설비, 보호기 및 접지, 예비설비 및 압축방식 규격, 영상 압축방식 규격, 전송스트림 다중화규격, 지상파방송의 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 형식,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제공에 필요한 EPG(Electronic Program Guide), 시간정보, 프로그램정보 제공 및 콘텐츠 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 ▶ **가입자 단말장치** :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의 접속규격 및 사업용 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상호작동에 관한 사항
 - 망 접속규격, 멀티캐스트 채널전환규격, 음성복호화규격, 영상 복호화 규격, 전송스트림역다중화규격, 제한수신(CAS)
- ▶ **서비스 품질** : 양질의 IPTV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 되는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 네트워크 품질 기준

패킷전달지연	패킷손실률	패킷지연편차	측정지점
100ms이하	10^{-3} 이하	50ms이하	분계점

- IPTV 서비스의 상시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고 적합하게 운용되는지 1점검 및 관리하도록 하는 설비를 구축토록 함

추진경과

1. 법률제정 추진경과

- ▶ '04. 하반기 : KT가 IPTV 도입 추진, BcN 시범사업으로 IPTV 논의
- ▶ '04. 12월 : 국조실의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 방송위·정통부의 「정책협의회」 등 구성을 통하여 IPTV 도입방안 논의
- ▶ '06. 7. 28. : 국무총리 자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 출범
 - 문광부/산자부/정통부장관/방송위원장/공정위원장/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도 포함한 민관합동위원회
 - 기구통합 및 IPTV 도입방안 논의
- ▶ '06. 7월 : 하나로텔레콤(現 SK브로드밴드)이 주문형비디오(VOD) 중심의 Pre-IPTV 서비스인 '하나TV' 개시
- ▶ '06. 11~12월 : 방송위·정통부는 IPTV 공동 시범사업 실시(KT 및 다음 컨소시엄)
- ▶ '07. 1. 19. :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구성
- ▶ '07. 4. 5. : 융추위는 IPTV 도입방안 다수안을 도출
 - ※ IPTV를 방송이 주된 서비스로 보고, 사업면허는 허가제를 적용하되, 자회사 분리·사업권역 제한은 하지 않음 (적용법을 결정 유보)
- ▶ '07. 7월 : 방통특위 소속위원 중심으로 모두 7개의 IPTV 도입법안 발의
- ▶ '07. 12월 : 국회 방통특위는 대안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 의결('07. 11월) 및 국회 본회의 통과('07. 12. 28)

◎ IPTV 도입 논의의 발아

- ▶ IPTV에 대한 본격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04년 하반기 KT의 IPTV 사업 추진 및 BcN 시범사업 추진부터라 할 수 있음
 - 당시, 방송위는 IPTV는 방송서비스라는 입장에서 정통부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정부 차원의 IPTV 도입 논의가 시작됨
 - 양 기구가 관여되는 사안의 성격상 방송위와 정통부의 IPTV에 대한 관할 논쟁으로 확대되어 갔고 이에 정부는 '05년 초반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방송위와 정통부 등이 참여하는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조정을 하려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함
- ▶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나 연구계, 업계 등에서도 '05년부터 IPTV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집중
 - 이를 반영하여 국회도 '05. 10월 유승희 의원이 정보미디어사업법안을 발의하였고, '05. 11월에는 김재홍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
 - 그렇지만, 동 법안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는 아직 논의가 결론을 맺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함
- ▶ 결국 '05년에서 민관합동기관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융추위”)가 출범하는 '06. 7월까지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는 단계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는 융추위 출범 이후에 이루어지게 됨

▶ 용추위 발족 배경

- 융합현상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과 법·제도 정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합동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설치 : 발족 '06. 7. 28일, 2007년 말까지 활동

▶ 용추위 구성

- 안문석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4명, 전문적 사항을 담당하는 전문위원 15명 위촉
 - ※ 위원들은 정책/산업분과 및 기구/법제분과로 나누어 역할을 수행
- 당연직 위원으로 문화·정통·산자부 장관, 방송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6명

▶ 용추위 주된 역할

- 방통기구 통합법안 마련 및 IPTV 정책방안 제시

◎ IPTV 도입 논의의 본격화

- ▶ IPTV 도입 논의는 '06.7월 용추위 출범을 계기로 범정부적 차원으로 확대되었음
 - 용추위 출범으로 그간 합의가 쉽지 않았던 방송위·정통부간 IPTV 시범사업 공동 추진 합의('06. 8월)도 이루어지는 등 논의의 진전이 보이기 시작하였음
 - 또한, IPTV 도입과 관련하여 방송위와 정통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
 - '07년내 IPTV 법제도 정비에 최대한 노력,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방송위에서 승인 또는 등록, IPTV에 시장점유율 규제 도입 등

- 하지만 서비스 성격 및 적용법률, 인허가 방식 등 이슈는 이견을 지속하였기 때문에 용추위에서 논의가 불가피하였음
 - ※ 서비스 성격(방송서비스 : 광대역융합서비스), 적용법률(방송법 : 융합법, 인허가(방송법 허가체제 : 등록제 적용),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제한(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자회사 분리 : 자율), 사업권역(7개 권역 유지 전제로 지역/전국면허 가능 : 전국 사업권역) 등
- ▶ 용추위에서 IPTV 도입 논의는 '07년부터 본격화되어 제7차 용추위('07.1.12)에서 상반기중 도입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논의가 활성화됨
 - 용추위는 다양한 논의와 의견청취, 토론회 등을 거쳐 '07.4. 5일 제11차 전체회의에서 IPTV 도입방안을 정하게 되었고 이를 국회에 제시
 - ※ 서비스 성격 및 적용법률,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제한, 사업권역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는 다수안과 소수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함

◎ IPTV 도입 논의의 마무리

- ▶ 국회는 '07. 1. 19일 방통특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IPTV 도입 논의에 나서게 되었음
 - 방통특위는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및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19명으로 구성되어 논의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형태를 갖추
- ▶ 방통특위는 '07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IPTV 도입논의를 가속화하였음
 - '07. 7월 이후 방통특위 소속 위원 중심으로 5개 IPTV 도입법안이 발의('05년 발의 2개 법안과 합쳐 7개 법안 마련)되었음
 - 방통특위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심사와 병행하여 단일 법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게 됨

- ▶ 방통특위는 이러한 노력 끝에 '07.11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동 법안이 '07.12.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됨
 - 가장 논란이 되었던 법 형태는 방송의 특별법 형태로 하여 방송법과 융합법이란 이해 차이를 조정

 - ▶ IPTV 도입을 위한 법제화는 늦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정리됨
 - 신속한 IPTV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후속 법제인 시행령이나 고시 제정 및 사업자 허가는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음
-

2. 시행령 추진경과

- ▶ '07.12.28. : 국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통과
※ 법률 공포('08.1.17.) 및 시행 ('08.4.18.)
- ▶ '07.12. ~ '08.3. : 시행령안 초안 마련(방송위 · 정통부 협의)
- ▶ '08.2.29. : 방송통신위원회 발족
- ▶ '08.4.16., 4.21. : 방송통신위원회 보고(제3차, 제4차 회의)
- ▶ '08.4.22. ~ 5.2. : 부처 협의
- 전문가 토론회 개최 ('08.4.28.)
- ▶ '08.5.9. ~ 5.29. : 입법예고
- 「온라인 공식의견 제시」제도 운영 (85건 제시) 및 공청회 개최 ('08.5.23.)
- ▶ '08.6.27. : 방송통신위원회 시행령 제정안 심의 · 의결
- '08.7.~8. :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 진행
- ▶ '08.8.12. : 시행령 공포 및 시행
- ▶ '08.8.26. : IPTV법 고시 시행 (시행령에 맞추어 시행)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 · 신고 · 등록 · 승인 절차 및 기준
- ▶ '08.8.26. : IPTV 콘텐츠 사업자 신고 · 등록 · 승인 신청 개시
- ▶ '08.8.28.~8.29. : IPTV 사업자 허가신청
- ▶ '08.9.24. : 방송통신위원회 IPTV 사업자 허가서 교부
- ▶ '08.10.31.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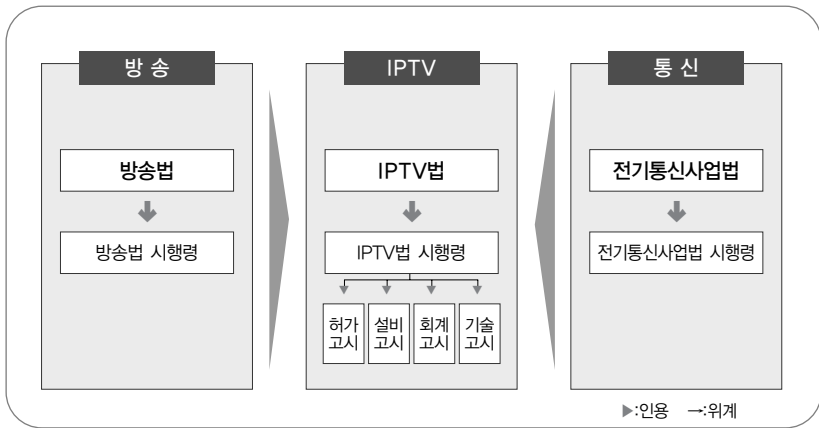
- ▶ '07.12.28일 국회에서 IPTV법이 통과되었으며, '08.1.17일 공포됨에 따라 IPTV법의 시행일자는 3개월후인 '08.4.18일이 되었음
 - 법 통과 후 시행까지는 약 3개월이 남아 있어 늦어진 법제화를 고려하여 시행령이나 하부 고시 제정 등은 신속히 진행시킬 필요가 있었음
 - 이에 통과 직후부터 방송위·정통부는 각각 시행령안 초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08.1월부터는 양자간 협의도 시작하였음
 - ※ 시행령은 방송위·정통부가 합의하여 마련하도록 법에서 규정하였기 때문에 양기관간 협의는 필수였음
-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방통 기구개편이 급물살을 타게 되어 시행령안 마련은 그간 방송위·정통부가 협의한 논의를 토대로 새로 출범된 방통위가 정리를 하게 되었음
 - 방통위 출범으로 시행령을 방통위 단독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시행령안 마련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음
 - 이에 방통위는 '08.4월 안을 마련하고 법제 절차를 진행함
- ▶ 방통위는 시행령안에 대하여「온라인 공식의견 게시」제도(85건 제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개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이후 '08.6월 최종안을 마련하고 법제심사·규제개혁심사 등 절차를 거쳐 '08.8.12일 시행령을 공포함
 - 시행령안 마련과 동시에 이에 부수되는 고시(설비, 허가, 회계고시) 안도 마련하여 법제 절차를 진행하여 8.26일 고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함
 - 시행령 등 IPTV법 하부 법제 마련은 IPTV 도입의 그간 지연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진행되었음

법률 및 시행령 주요내용

1. 법률 및 시행령의 구성

1) 개요

- ▶ IPTV법은 1) 방송-통신 융합의 성격을 지닌 신규 서비스사업에 방송 사업자, 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사업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2)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들 간 공정경쟁의 여건을 마련 하며, 3)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4) 방송·통신 산업 및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반영함



- ▶ IPTV법은 그 적용대상이 대부분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자에게 속한다는 점에서 IPTV 제공사업자와 IPTV 콘텐츠 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식에서 두 법령을 인용하거나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IPTV법과 동법 시행령은 기존의 방송사업 또는 통신 사업에 적용되던 규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에 부합하는 사업자 규제방식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님
 - 방송사업, 통신사업 및 IPTV 사업을 총괄하는 규제기구인 방통위는 IPTV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사업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와 기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기준, 회계분리 기준,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고시함(허가고시, 설비고시, 회계고시, 기술고시)
- ▶ 해외에서 IPTV 사업을 규제하는 방식은 케이블TV의 SO에 준하여 규제하는 경우(미국, 일본, 이탈리아)와 네트워크-콘텐츠 구분에 입각하여 규제하는 경우(영국, 프랑스) 등이 있음
- ▶ 미국의 경우, 1996년 개정된 「Telecommunications Act」 제651조에서 통신 사업자가 비디오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무선통신(radio-based systems), 기간전송(common carriage), 케이블 시스템(cable systems) 및 오픈비디오시스템(open video systems) 등 4가지를 제시
- Verizon과 AT&T 등 대규모 통신사업자는 케이블 시스템 방식으로 IPTV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주장
 - 2005년 텍사스주에서 처음으로 통신사업자들이 IPTV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지방 단위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주 단위 프랜차이즈를 발급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서 주 단위 프랜차이즈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 영국의 경우, 2003년 제정된 「Communications Act」가 모든 방송·통신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이 “전송” 부문에 해당하는지 “콘텐츠” 부문에 해당하는지(혹은 모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른 규제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IPTV 사업도 이러한 규제체계 하의 규율을 받음
- 「Communications Act」는 1) 전송부문에 대해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사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일반등록제(general authorization regime)를

- 시행하며, 2) 콘텐츠부문에 대해서는 선형(linear, 실시간과 유사한 개념) 콘텐츠와 비선형(non-linear) 콘텐츠를 구분하여 선형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의 경우 면허제를 적용하고 비선형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의 경우 자율규제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함
- IPTV 제공사업자가 실시간이 아닌 VOD 서비스만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등록 절차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함
 - IPTV 제공사업자가 직접 TV 채널을 사용하여 방송하지 않더라도 시청자의 방송채널 실시간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EPG(Electronic Program Guide)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TLCS(Television Licensable Content Services)라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함(이 경우 TLCS에 따른 의무는 EPG 서비스에 한정)
- ▶ 프랑스의 경우에도, 2004년 「커뮤니케이션 자유법」을 개정하여 방송과 통신을 “전자커뮤니케이션”으로 통합하고 전송수단(케이블망, 위성, 인터넷, ADSL, 무선전화망 등)에 관계없이 전송-콘텐츠의 구분에 따른 규제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규제방식이 IPTV 사업에도 적용되고 있음
- 전자커뮤니케이션 사업의 양대 규제기구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부문을 관장하는 CSA와 망 부문을 관장하는 ARCEP이 있으나, IPTV 사업의 경우 CSA가 대부분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 CSA가 관리하는 주파수 대역(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대역)을 할당받지 않은 방송서비스(케이블, 위성, 인터넷TV 및 모바일 TV)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에 의한 등록제를 채택함
 -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 제공사업자는 CSA에 두 가지의 사업신고서(declarations)를 제출해야 하는데, 하나는 선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실시간 TV·라디오 방송서비스에 해당)를 제공한다는 사업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채널의 취합(aggregation, 채널의 구성 및 운용에 해당)을 행한다는 사업내용임

- ▶ 일본의 경우, 2001년에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을 제정하여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IPTV)에 대해 등록하도록 함
 - 그러나 IP방식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방송’이 아닌 ‘자동 공중송신’으로 구분하는 저작권법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의 IP 방식에 의한 전송에 있어 저작권 처리절차가 복잡하였음
 - ’07. 1월부터 저작권법 개정으로 IP방식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제공도 ‘방송’과 동일하게 저작권 처리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08. 5월 NTT뿌라라가 IP멀티캐스트에 의한 디지털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을 포함한 IPTV서비스 ‘히카리TV’를 제공하게 됨

2) 주요특징

- ▶ IPTV법의 다수 규제가 방송과 통신에서 유래되고 적용 대상이 대부분 기존의 방송사업자 및 통신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과 연계가 되어 있음
 - 다수의 방송법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경쟁상황평가와 같은 통신사업에서 유래한 규제도 다양함
- ▶ 하지만, IPTV법은 IPTV라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존 방송·통신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방송서비스는 「방송법」, 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되거나 융합영역에 속하는 IPTV는 별도 규제체제를 가져가는 것이 IPTV법의 제정 배경이며, IPTV가 방송과 통신의 단순한 결합이 아닌 복합적 제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임
 - 제공사업과 콘텐츠 사업을 구분하는 사업 분류나 콘텐츠 동등접근, IPTV 사업자간 설비 동등제공, 전송설비의 보유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IPTV 사업자 개념 등은 융합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IPTV법은 방송·통신이란 기존 서비스의 법 체제를 참고하되 융합의 특성에 따른 규제를 선별하여 도입하였다 할 수 있음
- ▶ IPTV법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기존 서비스 중심 관점이 아닌 융합 서비스라는 성격에 부합하도록 나아갈 것으로 보임
 - 또한, 융합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IPTV법도 변화가 되고 이는 향후 방송과 통신의 통합법 체제로 이행이나 수평적 규제체제 정립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됨

3) 법률의 구성

◎ 전체 구성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6장 2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됨
- ▶ 본문은 총칙, 사업의 허가, 공정경쟁의 보장 및 촉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방송콘텐츠, 보칙,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 부칙은 법률의 시행일 등임

◎ 제1장 총칙

- ▶ 제1장에서는 법률의 제정목적(제1조), 주요 용어들의 정의(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에 대해 서술함
 - IPTV법 제정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특히 IPTV에 대한 개념적 정의 부분으로 이를 정리함으로써 IPTV법 제정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음
 - 또한, IPTV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과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이후 각각을 규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방송통신융합이란 개념을 법제화하고 실체화한 것이 IPTV법의 제1장이라 할 수 있음

◎ 제2장 사업의 허가

- ▶ 제2장에서는 IPTV 사업에 진입규제와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IPTV 사업자 허가와 관련된 사항, IPTV 제공사업자 및 IPTV 콘텐츠 사업자의 결격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 IPTV 제공사업자 규제사항
 -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며(제4조),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함(제6조)

- IPTV 제공사업자에 대한 신문·뉴스통신·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49%까지 허용함(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 IPTV 콘텐츠사업의 소유·경영 제한

-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49%까지 허용(제9조제1항)
- 대기업·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인은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종합편성을 행하는 IPTV 콘텐츠를 사업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음(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 제3장 공정경쟁의 보장 및 촉진

▶ 공정경쟁의 촉진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규제를 규정함

- 공정경쟁의 촉진(제12조), 시장점유율 제한 등(제13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 제공(제14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제15조), 이용자 보호(제16조), 금지행위(제17조)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장점유율 제한 : 방송구역별로 IPTV·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IPTV 제공사업자를 금지(제13조)
 -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 IPTV 제공사업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IPTV 제공사업자의 요청시 필수적인 전기통신 설비의 제공을 거절하지 못함 (제14조)
 - 이용약관 및 요금 : IPTV 제공사업자의 이용약관은 방통위에 신고, 단 이용요금은 승인(제15조)
 - 금지행위 : IPTV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경쟁 혹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함 (제17조)
-

◎ 제4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 ▶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신고·등록 또는 승인
 - IPTV 제공사업자에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통위에 신고 또는 등록, 다만 흡소핑, 보도전문, 혹은 종합편성에 해당 하는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통위의 승인대상임(제18조)
- ▶ 콘텐츠 동등접근
 - IPTV 콘텐츠사업자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다른 IPTV 제공사업자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제20조)
-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방송법 준용 등(제21조)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 채널의 구성과 운용, 프로그램의 편성, 광고,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방송광고, 협찬고지, 보편적 시청권, 재송신 등에 관하여 「방송법」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함

◎ 제5장 보칙

- ▶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제22조), 사업자의 출연 등(제23조), 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제24조), 과징금(제25조) 관련 사항을 규정

◎ 제6장 벌칙

- ▶ 법에서 규정한 각종 사항들의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벌칙(제27조) 및 과태료(제28조)를 규정함

4) 시행령의 구성

◎ 전체 구성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은 본문 24조, 부칙 1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 ▶ IPTV법 시행령은 IPTV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방통위가 고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 진입규제 관련 사항
 - IPTV 제공사업의 허가기간은 5년으로 하며(시행령 제3조),
 - 대기업의 기준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중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함(시행령 제6조제2항)
 - ※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기업·신문·뉴스통신사(특수관계자 포함)는 종합편성 혹은 보도 전문편성을 행하는 IPTV 콘텐츠사업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음
- ▶ 공정경쟁 관련 사항
 - 다른 사업의 지배력이 IPTV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IPTV 제공사업자는 IPTV 제공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함(제8조)
 - 경쟁상황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제9조)
 -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의 예외와 관련하여 IPTV 제공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공을 중단 혹은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제12조제3항과 제4항)를 규정함
 - 공정경쟁 조성 및 이용자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IPTV 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을 정함(제15조제1항과 별표<3>)

▶ 콘텐츠 관련 사항

- 신고 및 등록대상(제16조), 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제17조), 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제18조)를 규정
- IPTV 콘텐츠사업자의 신고·등록 또는 승인 절차를 규정함
- 방통위는 IPTV 콘텐츠사업자가 공급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1) 시청율(또는 시청점유율), 2) 공익성, 3) IPTV 사업자의 경쟁력에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 주요 방송 프로그램을 정하여 고시함(제19조)

▶ 기타 사항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 채널의 구성과 운용, 프로그램의 편성, 광고,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방송 광고, 협찬고지, 보편적 시청권, 재송신 등에 관하여(제20조) 「방송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함
- 방통위는 허가 후 3년이 지난 후 IPTV 제공사업자가 방송발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할 수 있음

2.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 개요

(1) 정 의

제2조(정의)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 의 의

- ▶ IPTV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IP(Internet Protocol)방식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실시간방송과 함께 VOD, 게임 등 각종 콘텐츠 및 전자상거래 등의 양방향 콘텐츠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음
- ▶ IPTV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법이 규제하는 대상을 밝히고 있으며, 나머지 유사 서비스는 기존 법의 적용을 받게 됨
 - 예를 들어, Pre-IPTV는 실시간 방송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통신서비스에 해당하며, IPTV법 규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게 됨
 - 또한, 케이블TV는 IP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실시간방송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역시 IPTV법을 적용받지 않고 방송법 규정을 적용하게 됨

◎ 논의 및 법제화 과정

▶ 제도 관련 논의

- IPTV의 정의 문제는 법률적으로 이를 어떻게 규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정하는 핵심 논점이었기 때문에 통신과 방송영역간 논란의 핵심이었음
- 방송위는 IPTV를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형태로 보고자 하였고, 정통부는 광대역융합서비스 개념으로 보았음
- 이처럼 IPTV에 대한 법률적 정의에 따라 기존 방송법 체계로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법 형태로 규제를 하여야 할 것인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 제도 도입 과정에서 IPTV의 법률적 정의에 대한 논쟁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음

▶ 법제화

- IPTV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융추위에서 잠정적으로 결정된 이후 법제화의 근간이 되었음
 - ※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네트워크에서 양방향성을 가진 IP방식으로 TV 혹은 이와 유사한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데이터, 영상, VOD, 전자상거래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제15차 전문위, '07. 1. 15)
- 국회 방통특위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현재의 정의를 만든 것임

◎ IPTV 정의

- ▶ IPTV는 ‘전송매체’, ‘전송기술’, ‘전달내용’, ‘단말기’, ‘품질보장’ 등의 5가지 기준을 통해 정의하고 있음
- ▶ IPTV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매체를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회선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말한다.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르면, 광대역통합정보 통신망은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고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임

※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은 기술방식을 특정하지는 않으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 3단계 기본계획(2007년 12월)에 따르면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품질보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네트워크로 통상 50M~100Mbps 이상의 정보통신망(제2조제1호에 의거 무선은 제외함)을 의미함

▶ IPTV 콘텐츠 전송 규약은 인터넷프로토콜(IP)을 적용함

-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이라 하여 모두 IPTV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IP 방식으로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식임

- IP방식은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정보 전달 통신 규약임

※ 인터넷 프로토콜(IP, Internet Protocol)은 송신 호스트와 수신 호스트가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데 사용하는 데이터 위주의 프로토콜 이며, OSI 네트워크 계층에서 호스트의 주소지정과 패킷 분할 및 조립기능을 담당한다. IP의 데이터는 패킷 혹은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덩어리로 전송된다. 특히, IP에서는 이전에 통신한 적이 없는 호스트에 패킷을 보낼 때 경로 설정이 필요없다. IP는 비신뢰성(unreliability)과 비연결성(connectionless)이라는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해, 비신뢰성이란 전송되는 데이터의 안정성, 흐름에 관여하지 않아 전송되는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되었는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IP 패킷의 전달 방식으로는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방식이 있음(출처: 위키피디아)

▶ IPTV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및 양방향 콘텐츠가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방송을 의미함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과 양방향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IPTV로 규정함으로써 IPTV가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을 모두 아우르는 융합서비스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 IPTV를 시청하는 단말기는 일반적으로 TV 수상기를 의미하지만, TV로만 한정하지는 않음
 - 주요 시청매체는 TV가 되겠지만, 단말의 융합 등을 고려하여 단말을 한정하지 않은 것임
 - IPTV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술적, 서비스적으로 IPTV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필요

- ▶ IPTV는 실시간 방송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정한 서비스 품질(QoS)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제공되는 인터넷접속서비스의 네트워크인 공중 인터넷(public internet)은 QoS가 보장되지 않는 소위 'Best effort' 망이기 때문에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 확보가 필요
 - ※ Best effort network : 인터넷을 경유하는 트래픽을 전송 가능한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품질 관리나 사전적 모니터링을 지원하지 않는다. 전자우편, 웹브라우징 등 패킷 지연에 민감하지 않는 서비스에 적합한 반면, 인터넷전화, 실시간 방송과 같은 지연에 민감한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음
 - 일정한 서비스 품질의 보장이란 기준은 기술기준 등을 통해 정하여 지게 되며,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이 품질 기준을 정하고 있음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20조(네트워크 품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설비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패킷 전달 지연 : 100ms이하(0.1초)
 - 송신지점(IPTV 방송국사)과 수신지점(분계점)간의 패킷 전달 시간차이(기술고시 제3조제16호)
 2. 패킷 손실률 : 10-30이하(1/1,000)
 - 패킷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되는 동안에 손실되는 비율(기술고시 제3조 제17호)
 3. 패킷 지연 편차 : 50ms이하(패킷 전달 지연 시간의 편차)
 - 임의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 범위로서 전송되는 패킷 상호간의 시간 차이(기술고시 제3조제18호)

▶ 유사 서비스와의 비교(예)

구 분	케이블TV	Pre-IPTV	IPTV	인터넷TV
전송매체	케이블TV 망	인터넷망	인터넷망	인터넷망
전송기술	RF방식 (단방향·양방향)	IP방식 (양방향)	IP방식 (양방향)	IP방식 (양방향)
전송내용	실시간방송	양방향 콘텐츠	실시간방송, 양방향 콘텐츠	실시간방송, 양방향 콘텐츠
단말기	TV	TV	TV 등	PC 등
QoS	보장	미보장	보장	미보장
서비스 종류 (적용법률)	방송 (방송법 규제)	부가통신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IPTV (IPTV법)	부가통신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3.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의 의

-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의미함
 - 전통적인 방송은 모두 실시간이기 때문에 방송법에서는 실시간 방송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 IPTV는 실시간방송과 양방향 콘텐츠가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방송이며, 규제 대상을 구분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게 되었음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개념

-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제공은 IPTV 콘텐츠사업자가 하게 됨
 - 기존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도 IPTV 제공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사업자의 지위를 가져야 함(IPTV법 제18조제2항)
-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은 내용 및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함
 - IPTV 콘텐츠사업자가 IPTV 제공사업자에게 제공한 방송프로그램을 IPTV 제공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 함
-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은 다른 매체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함
 - 동시에 제공한다는 것은 IPTV 콘텐츠사업자가 정한 시간적 편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함
 - ※ 예를 들어, VOD는 IPTV 콘텐츠사업자가 IPTV 제공사업자에게 제공하면 IPTV 제공사업자의 콘텐츠 저장장치에 저장되고,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때문에 동시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방송프로그램이 아님

(2) 사업분류

제2조(정의)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 한다.

-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

◎ 의 의

- ▶ IPTV사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IPTV 제공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IPTV 콘텐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 ▶ 방송법에서는 전송매체(지상파, 종합유선, 위성)와 사업형태(종합 유선 방송사업, 채널사용사업)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IPTV는 IPTV 제공사업과 콘텐츠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 논의 및 법제화 과정

- ▶ 용추위 논의에서 정통부는 2분류 체계(네트워크-콘텐츠)를, 방송위는 3분류 체계(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를 주장하였음
- ▶ 용추위는 IPTV사업자를 방송법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준하여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채택함
- ▶ 이러한 논의들을 국회 방통특위에서 고려하여 현 사업 분류체제가 형성 되었음

◎ IPTV 사업분류의 특징

- ▶ IPTV는 이용자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IPTV 제공사업)과 콘텐츠를 IPTV제공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IPTV 콘텐츠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방송법은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음
 - 즉, IPTV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으며, IPTV 콘텐츠 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지위를 별도로 획득하여야 함
 - 반면, 방송법에서 지상파사업자는 이용자(시청자)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별도의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지 않고 콘텐츠도 제공할 수 있음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주요 사업은 다채널 방송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지만, 별도의 콘텐츠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않더라도 지역채널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콘텐츠 사업을 제공할 수 있음
- ▶ IPTV 콘텐츠사업자는 실시간방송프로그램 및 양방향 콘텐츠를 IPTV 제공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유사하지만 콘텐츠를 제공하는 범위는 실시간 방송을 뛰어넘어 게임, 정보 제공 등의 양방향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등 광범위함
- ▶ IPTV 사업에는 네트워크 제공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IPTV 제공사업자는 직접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제공하면 됨
 - ※ 단, IPTV 사업자에게 설비제공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않는 사업자의 IPTV 진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IPTV법 제14조)

◎ 주요 개념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IPTV 제공사업)
 - IPTV 제공사업은 IPTV 콘텐츠사업자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함
 - IPTV 제공사업이 실제화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함
 - IPTV 제공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함 (규제적 측면)
 -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보유/임차하여야 하고 플랫폼 설비가 필요함 (기술적 측면)
 - IPTV 콘텐츠사업자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음
 -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함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IPTV콘텐츠 사업)
 - IPTV 콘텐츠사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IPTV 콘텐츠사업자로 신고·등록·승인 (규제적 측면)
 - 콘텐츠를 제작·수급
 - IPTV 제공사업자에 제공

〈IPTV 사업자 구분 예시〉

서비스 이름	콘텐츠 제작	콘텐츠 제공	IPTV서비스 제공
사업 구분	콘텐츠 제작 사업	IPTV 콘텐츠 사업	IPTV 제공 사업
진입 규제	비방송 규제	신고/등록/승인	허가
사업자 예시	독립프로덕션, 콘텐츠 판권보유사, 자체 제작 PP, 지상파방송사	PP, 지상파방송사, CP	IPTV 사업자

◎ 방송사업 구분과의 비교

- ▶ 방송법에서 사업구분은 전송 매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자의 채널 또는 채널의 일부 시간을 사용하는 사업인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방송법 제2조제2호)
-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와의 총체)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 해외 IPTV 사업 분류

* 주요 국가의 IPTV 제공사업자의 사업자 지위는 다음과 같음

구분	사업 분류
프랑스	실시간 방송서비스와 유사한 '선형 시청각미디어 서비스(linear audiovisual media service)'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방송 규제기관(CSA)에 신고(Declarations)
독일	디지털케이블방송, 자체 채널이 없는 경우 별도의 방송 허가를 받지 않지만, 자체 채널을 운영할 경우에는 지역방송규제기관(LMS) 허가 필요
일본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사업자로 분류되며, 총무성에 등록
영국	TLCS(Television Licensable Content Service) 사업자로 분류되며(EPG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 Ofcom 허가
미국	케이블 시스템 프랜차이즈 혹은 OVS(Open Video System) 면허를 받아야 하며, 지역 케이블 프랜차이즈는 지방정부로부터, OVS 면허는 연방정부(FCC)로부터 받아야 함

출처 : Regulation of the IPTV Value Chain (Ovum, 2007.2)

(3) 사업자 분류

제2조(정의)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 ▶ IPTV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에게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
 - IPTV 제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방통위는 9. 24일에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3개 사업자에게 IPTV 제공사업을 허가하였음
- ▶ IPTV 콘텐츠사업자는 IPTV 제공사업자에게 IPTV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IPTV 콘텐츠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에 신고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함
 -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종합편성, 보도전문, 홈쇼핑 방송사업으로 콘텐츠의 내용에 의하여 사업자의 진입규제가 구분됨
 - ※ 허가, 승인, 등록, 신고의 일반적 의미
 - 허가 :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주는 행정적 행위로서 명령적 행위의 일종(행정법 I, 김동희 저)
 - 인가(승인) :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 행위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법률 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 시켜 주는 타자를 위한 행위이며, 보호 또는 감독을 위한 공익적 견지에서 행하여 지는 것임(행정법 I, 김동희 저)
 - 등록 :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특정장부에 기재 하는 것(www.lawnb.com 법률용어집)
 - 신고 :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통지가 의무로 되어 있는 작용(행정법 I, 김동희 저)

◎ 방송 및 전기통신 사업자 분류

▶ 방송사업자 분류

- 방송사업자는 사업분류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통신사업자 분류

- 전기통신사업자는 크게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별정통신 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음

〈사업자 분류 비교〉

진입방식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IPTV 사업자
허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IPTV 제공사업자
승 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보도전문/ 홈쇼핑 채널 사용사업자	n/a	IPTV 콘텐츠사업자 중 종합편성/보도전문/ 홈쇼핑 사업자
등 록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IPTV 콘텐츠사업자 중 실시간방송프로그램 제공사업자
신 고	n/a	부가통신사업자	IPTV 콘텐츠사업자 중 비(非)실시간 콘텐츠 제공사업자

※ 구체적인 진입방식은 아래 진입규제에서 설명

2) 사업의 허가

(1) 사업권역

제6조 (사업권역)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 권역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 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요청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방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모든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한다.

◎ 의 의

- ▶ 사업권역은 IPTV 제공사업자가 IPTV 제공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권역을 의미하며 전국과 개별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 IPTV법은 IPTV 제공사업은 전국을 단일 사업권역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사업권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IPTV가 제공되는 기반인 인터넷이 글로벌한 네트워크로서 지역 구분이 없음을 고려 전국 권역을 원칙으로 함

◎ 논의 및 법제화 과정

- ▶ 제도 관련 논의
 - IPTV사업의 사업권역 문제는 법제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
 - 통신 영역은 IPTV가 지역 구분이 없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사업권역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을 주장

- 방송 영역은 IPTV와 유사한 방송사업인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같이 지역 사업권역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음

※ 방송법 제12조(지역사업권)는 종합유선방송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는 일정한 방송구역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지역사업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방송구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함(방송구역은 77개임)

▶ **용추위의 논의**

- 용추위는 사업권역과 관련하여 전국권역, 지역권역(중·대 권역, 현행 77개 권역보다 서비스 권역 확대), 전국/지역권역 병행이란 3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다수 의견으로 전국 권역 방안을 제시함

▶ **법제화**

- 국회는 IPTV의 사업권역을 전국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사업권역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IPTV법에 반영 함

◎ **사업권역의 원칙 및 예외**

▶ **IPTV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함**

- 제6조제1항 단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IPTV 제공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임
-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권역을 정한 것은 IPTV 제공사업자가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지니기도 함

▶ **예외적으로 전국이 아닌 지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대상 사업자가 한정적으로 인정됨**

- 취지는 전국사업을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자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을 따름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조) 함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참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다음 기준에 맞는 기업, 단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및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제외함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참고 : 별표2의 기준)
 - (1)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임 : 참고)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지역사업을 위한 요건

- ▶ IPTV를 지역적으로 제공하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자의 허가 요청이 있어야 함
 - IPTV 제공사업 허가를 특정 지역으로 하여 줄 것을 해당 중소기업자가 방통위에 요청하여 함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허가 요청과 이에 따른 허가 신청을 동시에 할 수도 있을 것이나, 방통위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할 지 여부를 우선 결정할 것임
- ▶ 중소기업자의 허가 요청에 대하여 방통위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 함
 -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방통위가 허가 요청별로 인정 여부를 정할 사항임

- ▶ 지역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권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허가 대상이 되므로 방통위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전국적인 서비스 개시 의무를 지는 경우

- ▶ 대상 사업자 : 전국적으로 IPTV 제공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임 (동 사업자는 IPTV 제공사업자이어야 하며 IPTV 제공사업을 직접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음)
 -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3항제1호
 - ※ 해당사업자는 KT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6호)
 -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전년도 매출액이 방통위가 서비스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 국내 총매출액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 ※ 해당사업자는 KT, SK텔레콤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6호)
- ▶ 대상 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시행령 제5조제1항) 이내에 「방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방통위가 고시한 모든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함
 - 방통위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시행령 제5조제2항)

(2) 진입규제

제4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 생략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능력
6.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7. 시설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8.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허가기간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기간은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생략 >

◎ 의 의

- ▶ IPTV 제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인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IPTV법은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심사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허가 기간은 5년의 범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구체적인 허가관련 사항은 허가고시에서 정함

◎ 논의 및 법제화 과정

- ▶ IPTV사업에 있어 초기 법제 논의 단계에서는 등록으로 진입을 보다 자유롭게 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 방송위와 정통부 모두 허가로 진입 규제를 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함
- ▶ IPTV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방송위와 정통부가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과 같이 방송위의 허가 추천, 정통부의 허가라는 이원적 체제이었음
 - 하지만, '08.2.29일 방통위의 발족에 따라 허가체제도 일원화 되어 방통위에 의한 허가로 종료되도록 되었음
- ▶ 허가기간은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 일부에서는 IPTV가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유사한 서비스이므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동일한 허가기간 즉 “3년”의 허가기간 논의가 있었으나,
 - ※ 방송법 제16조(허가 및 승인유효기간)은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사업등의 허가기간은 5년을 넘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시행령 제16조에 이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IPTV가 새로운 융합서비스라는 특성 및 규제완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5년으로 정리됨

◎ IPTV 제공사업의 허가 절차

- ▶ IPTV 제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대상자는 법인에 한함
 - IPTV 콘텐츠사업자의 자격은 자연인도 가능하나 IPTV 제공사업은 설비 등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인으로 한정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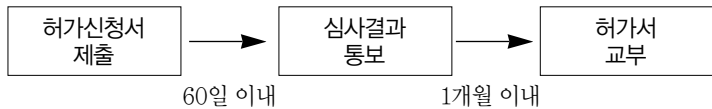
▶ 허가신청 절차

- IPTV 제공사업의 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하여야 함

※ 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허가신청서에 포함될 사항으로
1) 법인명,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콘텐츠 수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3) 재정 및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시설계획서(주요 시설의 임차 시는 임차계획을 포함한다), 5) 법인의 정관, 6)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허가신청을 받은 방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허가 심사사항별 달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허가 절차 개요〉



▶ 허가심사

-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허가심사는 총점은 500점 만점으로 하고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의 100분의 70 이상을 득한 경우에 허가
 -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및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음
 - 신규허가 심사사항 및 배점 (허가고시 별표2 참조)

〈고시 제2 별표 등〉

심사사항	심사 항목	배 점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80)	1-①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및 보편적 접근성 구현	비계량(40)
	1-②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비계량(40)
2.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 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100)	2-① 콘텐츠 확보계획의 우수성	비계량(40)
	2-② 실시간방송프로그램 단위 구성의 우수성	비계량(40)
	2-③ 방송영상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비계량(20)
3.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80)	3-① 유료방송 및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및 거래 계획의 적정성	비계량(30)
	3-② 공정경쟁 관련 내부절차 확보계획의 적정성	비계량(30)
	3-③ 방송통신 서비스 연계제공의 적절성	비계량(20)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80)	4-① 시장분석의 합리성과 서비스 제공계획의 우수성	비계량(20)
	4-② 서비스 고도화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	비계량(20)
	4-③ 소요(임차)설비추정, 콘텐츠·설비투자계획의 적정성	비계량(20)
	4-④ 요금체계의 적정성	비계량(10)
	4-⑤ 인력 및 조직계획의 적정성	비계량(10)
5. 재정적 능력(80)	5-① 수익성	계량(20)
	5-② 안정성	계량(20)
	5-③ 성장성	계량(20)
	5-④ 투자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비계량(10)
	5-⑤ 신용등급	계량(10)
6. 기술적 능력 및 시설 계획의 적정성(80)	6-① 시스템구성, 서비스 품질 목표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비계량(30)
	6-② 전송시설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비계량(30)
	6-③ 타 전기통신설비와의 연동, 운용보존 및 장애 시 대비계획의 적정성비	비계량(20)
계		500

- 최초의 IPTV 제공사업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사업계획서 접수 : '08년 8월 28일 ~ 29일
- 사업계획서 심사 : '08년 9월 2일 ~ 5일

- 방통위 의결 : '08년 9월 8일
 - 허가서 교부 : '08년 9월 24일
 - 최초 IPTV 제공사업자 선정 절차에서는 KT,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및 오픈IPTV의 4개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오픈IPTV를 제외한 3개 사업자를 사업권자로 선정
 - 향후는 자유롭게 IPTV 제공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심사절차는 최초 IPTV 제공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와 차이는 없음
- ▶ 허가사항 변경(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IPTV 제공사업자의 합병 및 분할
 - IPTV 제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이 경우 그 사업의 양수자는 IPTV 제공사업 허가를 함께 받아야 함
 - 사업권역의 변경
 - 변경허가의 절차 및 심사 내용 등에 대하여는 허가심사 관련 사항을 준용

[법]

제18조 (콘텐츠의 공급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 또는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생략 >

[시행령]

제16조 (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대상)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자로서 콘텐츠(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사용채널의 콘텐츠만 해당한다)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자가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 ②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에 따라 허가·등록 또는 승인받은 것이 아닌 콘텐츠(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사용채널의 콘텐츠만 해당한다)를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하려는 자

◎ 의 의

- ▶ IPTV 콘텐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방통위에 신고/등록 및 승인이라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진입 요건의 차이는 방송법 등 타 법상 등록여부 및 제공 콘텐츠 분야 등에 따라 발생함

◎ 논의 및 법제화 과정

- ▶ 논의 기본방향
 - IPTV 콘텐츠사업자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방송법상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진입규제를 원용함
 - 다만, 방송법과 달리 신고라는 완화된 진입규제를 도입하여 IPTV 콘텐츠사업자가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법제화 과정 중 쟁점사항

-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기존 방송법상 PP 등 방송사업자의 IPTV 콘텐츠 사업자로의 별도 신고/등록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었음
- 규제개혁위원회는 시행령 규제심사시 중복규제 등에 해당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는 등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결국 시행령 제정시 별도 진입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됨

◎ IPTV 콘텐츠사업의 신고/등록 및 승인

▶ IPTV 콘텐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등록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 대상자는 자연인 및 법인 가능

- 개인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장하고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IPTV 제공사업과는 다르게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음

▶ IPTV 콘텐츠사업의 신고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 IPTV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사업자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서 콘텐츠(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사용채널의 콘텐츠만 해당)를 IPTV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임
 -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콘텐츠를 IPTV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 ※ 부가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예, e-mail, 검색, 인터넷홈쇼핑, 인터넷 포털 등)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콘텐츠를 IPTV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를 의미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속칭 독립프로덕션) 등 해당

- ▶ IPTV 콘텐츠사업의 등록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 IPTV 제공사업자에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IPTV 콘텐츠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에 따라 허가·등록 또는 승인받은 것이 아닌 콘텐츠(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사용채널의 콘텐츠만 해당)를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 2)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하려는 자

- ▶ IPTV 콘텐츠사업의 승인 (시행령 제18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 또는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 승인대상 사업자의 성격(방송법에 의해 승인받은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와 IPTV법에 의하여 신규로 승인받는 사업자)에 따라 제출 서류 및 처리 기간 등에 차이를 두고 있음(허가 고시 제19조 참조)

- ▶ 신고, 등록 및 승인 절차
 - IPTV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콘텐츠 공급분야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 법 시행령 제17조 이하에는 신고시 신청서에 포함될 사항으로 1)사업자명, 2)대표자명, 3)상품 또는 서비스명, 4)콘텐츠 공급 분야, 5)주된 사무소 및 주요 시설의 소재지, 6)납입자본금, 7)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8)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소유 현황 및 관련 증명서류, 9)다른 법률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신고, 등록 및 승인의 기간은 각각 상이함
 -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로 효과가 발생하며 특별한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즉시 신고증 교부가 원칙임
 - 등록은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기로 함
 - ※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허가고시 제16조 참조
 - 승인은 승인신청서 접수 이후 60일 이내에 심사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다만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IPTV 콘텐츠사업자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함
 - ※ 허가고시 제19조 참조
- 신고, 등록은 별다른 절차는 없으나 신규 승인의 경우 허가에 준하는 심사를 요하며, 총점은 500점 만점으로 하고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의 100분의 70 이상 득한 경우에 신규 승인(허가고시 제22조 등 참조)
 - 심사사항 및 배점 (허가고시 별표 4 참조)

심사사항	심사 항목	배 점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120)	1-① 방송의 공적책임 및 실현가능성 1-② 보편적 서비스의 구현 1-③ 시청자 권익 실현 1-④ 사회문화적 기여도	비계량(30) 비계량(30) 비계량(30) 비계량(30)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120)	2-① 콘텐츠 기획·편성 계획의 적정성 2-② 콘텐츠 제작·수급 능력 2-③ 콘텐츠 확보 계획의 타당성비	비계량(40) 비계량(40) 비계량(40)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100)	4-①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4-②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4-③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4-④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의 적정성	비계량(30) 비계량(20) 비계량(30) 비계량(20)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00)	5-① 재정적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5-② 콘텐츠 제작시설·운영계획의 우수성	계량(50) 비계량(50)
5. 방송발전 지원계획(60)	6-① 방송영상산업육성, 지원계획의 우수성 6-②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대한 기여 의지	비계량(30) 비계량(30)
계		500

(3) 소유규제

[법]

제8조 (겸영금지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 회사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 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④ < 생략 >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시행령]

제6조(겸영금지 등) ① < 생략 >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중 그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말한다.

◎ 의 의

- ▶ IPTV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신문·뉴스통신사가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의 한도를 규제함
- ▶ IPTV 콘텐츠 사업자중 종합편성·보도전문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기업 및 신문·뉴스통신사가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IPTV 제공사업자의 소유규제

-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뉴스 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IPTV 제공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은 통상 일간신문을 의미하며,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뉴스통신사들을 의미함
 - 방송법에서 신문사, 뉴스통신사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 지분율인 33%보다 완화되었음
 - IPTV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신규 매체인 IPTV에 대한 규제 완화 고려가 반영됨

▶ 소유제한 입법례

구 분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IPTV법(IPTV사업자)	제한없음	49%
방송법(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제한없음	33%
방송법(위성방송사업자)	49%	33%

◎ IPTV 콘텐츠사업자의 소유규제

- ▶ IPTV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갖는 특성에 따라 소유규제 정도가 상이함
- ▶ 보도전문·종합편성 IPTV 콘텐츠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법과 동일하게 대기업(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함),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참여가 금지됨
 - 시행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중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대기업으로 보고 있으며 동 회사들은 보도전문·종합편성을 위한 IPTV 콘텐츠사업이 불가능

- 공정위의 '08년 상반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자산 총액 10조이상인 기업집단은 23개임

- ▶ 여타 신고·등록 사업자 및 승인 사업자 중 홈쇼핑 IPTV 콘텐츠 사업자는 소유제한이 없음

◎ **초과 소유시 의결권 행사 제한**

- ▶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그 주식취득행위는 법 위반행위로서 시정명령 또는 허가 등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하나, 그 취득행위의 효력 유무 및 의결권 행사 가능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 이에 대해 법은 먼저 주식취득행위에 대해서는 주식소유 초과상태의 해소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한편, 소유제한 규정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정지되도록 함(법 제10조)
 - 이러한 입법례는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동일하게 규정됨

제9조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을 제외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 의 의

- ▶ 문화적 다양성과 IPTV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 측면을 감안하여 IPTV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음

◎ IPTV 제공사업자 및 IPTV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규제

▶ 외국인 등의 범위

- 외국인이란 외국의 정부나 단체, 외국인,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 외국인은 IPTV 제공사업자 및 IPTV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보도 전문 제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 이는 기존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의 지분을 49%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며,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지분제한과 같이 규제를 하고 있음
-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이고 그 외국인 등이 15%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은 외국인으로 의제하되 그 외국인 등의 IPTV사업자 및 IPTV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분율이 1% 미만인 경우에는 동 외국인 지분을 전체 외국인 지분을 계산에서 제외함

▶ 소유제한 입법례

구 분	외국인
IPTV법 (IPTV사업자, IPTV 콘텐츠사업자)	49%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49%

- ▶ 보도전문·종합편성 IPTV 콘텐츠사업자에 있어서는 외국인 등의 지분 소유가 금지됨

(4) 경영규제

제8조 (경영금지 등)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라디오방송채널 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할 수 없다

◎ 의 의

- ▶ 방송법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의 수직적 통합을 제한하기 위해 규정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경영 규제를 IPTV사업에도 동일하게 도입함
- ▶ IPTV 제공사업자는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체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경영할 수 없도록 함

◎ 주요내용

- ▶ IPTV 제공사업자는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즉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 데이터방송 채널사용 사업자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할 수 없음
 - 동 규제는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제2호와 동일함
 - ※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업자로 '08년 1월 기준 220개임
 - ※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라디오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업자로 '08년 1월 기준 210개임
 - ※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데이터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업자로 '08년 1월 기준 76개임

- 데이터방송이란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함

- ▶ 경영할 수 없는 사업자의 수는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별로 개별적으로 산정됨
 - 즉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5분의 1,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5분의 1,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5분의 1 초과 여부를 각각 계산함
- ▶ “경영”의 의미는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함
 - 이는 방송법과 동일하게 5% 이상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는 계열 관계를 떠나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임

◎ 위반시 시정 의무 부과

- ▶ 겸영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간내에 위반상태를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법 제10조 제2항)
- ▶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IPTV 제공사업 허가취소, 사업정지가 가능함(법 제24조제1항 제3호)

3) 공정경쟁의 보장 및 촉진

(1) 회계분리

[법]

제12조 (공정경쟁의 촉진) ①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절차·방법, 평가위원회의 설치·조직·업무·위원의 선임방법·위원의 임기 및 신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조 (공정경쟁의 촉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의 의

- ▶ 다른 사업에서 지배력이 IPTV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IPTV 제공사업자에게 방통위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IPTV 제공

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함

- ▶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IPTV 제공사업자에게 회계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회계보고서 검증 절차를 마련함

◎ 논의 및 법제화 과정

- ▶ 방송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IPTV 제공사업에 진입하는 경우 지배력 견제를 위하여 자회사를 분리하도록 하자는 입장이었음
 - 반면, 정통부는 자회사 여부는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맡길 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음
- ▶ 용추위에서는 대기업이나,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진입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정리하였음
- ▶ 국회 입법시 자회사 분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다른 사업에서 부당한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시행령에 두도록 하였으며 이에 시행령 마련시 회계분리를 도입한 것임
 - IPTV 제공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IPTV 제공사업과 자신이 영위하는 타 사업의 회계를 분리하여 정리하도록 함

◎ 회계분리 제도의 의의

- ▶ 회계분리는 통신시장에서 '94년에 도입 되었으며, 회계분리의 의무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여되고 있음
 -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 (회계정리)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 ▶ 회계분리 제도는 각 서비스별 공정한 요금산정, 지배력 전이방지 등 규제의 필요에 따라 회사의 수익/비용과 자산을 서비스별로 나누어 보고하는 것임

- 통신산업은 동일한 설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성이 있어 서비스별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망 운영에서 발생하는 공통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부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 회계분리제도는 이러한 공통설비 원가에 대한 명확한 배부기준을 수립하고 정확한 비용배부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함
- 이를 통하여 서비스간 상호보조를 방지하고 소매요금의 원가 및 접속료 등 도매대가를 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 IPTV에 있어 회계분리제도

- ▶ 통신사업에서 정립된 회계분리 제도를 도입하여 IPTV 제공사업을 타 사업과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함으로써 부당한 경쟁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 회계분리는 통신사업에서 유래되었지만 통신사업자가 IPTV 제공사업을 하는 경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IPTV 제공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 ▶ 회계고시에서는 회계분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제3조제1호)
 - 사업자가 융합사업과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을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해당 사업별로 할당·배부하는 것
 - 형태별 분류란 자산 등을 유·무형자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발생 형태별 계정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것임
 - 기능별 분류란 위에서 형태별로 세분화된 계정을 방송국기능, 방송제공기능, 전송기능, 선로기능 등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능별로 재분류하는 것임
 - 기능별 분류까지 하면 자산, 비용, 수익이 IPTV 제공사업을 구성하는 기능별로 배부되며 이에 따라 각각의 원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됨

(2) 경쟁상황평가

[법]

제12조 (공정경쟁의 촉진) ①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9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시행령]

제9조(경쟁상황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경쟁상황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3. 그 밖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공정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 한다.

1~6. 생략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의 의

- ▶ IPTV법은 IPTV 시장의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경쟁상황평가 제도 도입

- ▶ 경쟁상황평가는 통신사업에서 유래하였는데 경쟁정책을 가져감에 있어 필요한 시장 경쟁상황의 파악을 위한 제도로서 IPTV법의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과 유사함

◎ 제도 비교

- ▶ 통신시장은 기간통신사업에 대해 매년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4 (경쟁의 촉진)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 IPTV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쟁상황평가는 융합서비스라는 IPTV의 특성 때문에 다소 차이가 존재
 - IPTV법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쟁상황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정 당시 방송위와 정통부가 각각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한 것임
 - 통신시장의 경쟁상황평가는 각 서비스별 단위시장으로 하나 IPTV는 융합서비스임을 고려 단위시장 및 관련시장을 종합적으로 평가

◎ 경쟁상황평가 운영

- ▶ 평가위원회 구성 (이하 시행령 제9조 참조)
 - 위원은 9인,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위원은 방통위원장 임명/위촉
 - ※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방송·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된 학과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방송·통신 등 미디어 사업과 관련된 협회 또는 단체 등의 임원 등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가능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평가위원회 역할

- 경쟁상황 평가의 실시, IPTV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자문 등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경쟁상황평가 시행 (시행령 제10조 참조)

- 평가위원회에서 단위시장 또는 관련 시장 확정
 - 시장확정 또는 관련 시장의 확정이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상품군과 거래지역 등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임
 - ※ 예를 들면, 연필과 볼펜은 동일한 시장에 속하는가? 서울의 연필시장과 부산의 연필시장은 별개의 시장인가 아니면 단일의 전국 연필시장에 속하는가?
 - ※ 시장확정은 경쟁상황평가의 대상이 되는 시장의 범위를 먼저 한정하는 것으로 모든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면 경쟁상황평가는 의미가 없으므로 IPTV 제공 사업과 직접 (단위시장) 또는 관련되는 시장(관련시장)으로 범위를 한정함
 - ※ 가령, 경쟁상황평가의 대상이 되는 단위시장은 IPTV 시장이 될 수 있고, 동 시장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쟁상황평가를 할 수도 있음. 또한, IPTV 제공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시장을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임
 - 시장 확정 판단 기준으로 수요 대체성을 1차적 판단기준으로 이용하되, 지리적 범위, 필수설비,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진입 장벽, 기술의 융합 및 발전 등의 지표를 고려한 공급 대체성 및 잠재적 진입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함
- IPTV법에서는 경쟁상황평가 실시를 위해 서비스의 수요 대체성·공급 대체성, 서비스 제공범위 및 지리적 범위, 이용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위 시장 또는 관련 시장을 확정하도록 함
 - 수요 대체성은 가격인상에 대한 이용자의 대체 가능성을 나타냄
 - 공급 대체성은 가격인상에 대한 공급자의 대체 가능성을 나타냄
 - ※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시장 확정 기준은 서비스의 수요대체성·공급대체성, 서비스제공의 지리적 범위, 소매·도매 등 서비스제공의 거래단계, 구매력·협상력의 차이 또는 수요의 특수성 등 이용자의 특성 등임

- 평가위원회에서 단위시장 또는 관련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
 - 시장구조 : 경쟁사업자의 수, 경쟁사업자 상호간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관계,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콘텐츠 수급관계 등
 - 이용자 대응력 :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대체 서비스 또는 사업자 전환의 용이성 등
 - 시장성과 : 사업자의 요금 · 품질의 수준, 수익성 등
 - 사업자 행위 : 요금 · 품질경쟁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 기타 : IPTV 제공사업의 단위시장 또는 관련시장의 상황
 - ※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평가시 종합적 고려 사항
 1. 시장점유율 · 진입장벽 등 시장구조
 2.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취득의 용이성, 서비스 공급자 전환의 용이성 등 이용자의 대응력
 3. 요금 · 품질경쟁의 정도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
 4. 요금 · 품질의 수준, 전기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

 - ▶ 경쟁상황 평가 결과의 활용 (시행령 제11조)
 - 방통위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IPTV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
-

(3) 시장점유율 제한

제13조 (시장점유율 제한) 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합산하여 「방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구역별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사업 가입 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된 후 1년 이내에는 5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의 의

- ▶ IPTV법은 공정경쟁 확보와 관련하여 회계분리와 함께 종합유선 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을 포함한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를 기반으로 시장점유율 제한을 도입

※ 방송법 시행령 제4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을 가입 가구 수를 기준으로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논의 및 법제화

▶ 제도 관련 논의

- IPTV의 시장점유율 제한은 유료방송시장에서 개별 IPTV 제공 사업자가 지배력을 확고히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
- 통신사업자의 IPTV 제공사업 진입으로 인한 방송시장의 급격한 잠식을 방지하고자 제도 도입 논의 시작

▶ 용추위의 논의

- 용추위는 IPTV 시장점유율 규제 기준으로 “유료방송시장(종합 유선 방송+위성방송+IPTV) 33% 점유”를 다수안으로, 국내 총 가구 기준 33% 점유 또는 고정수신 멀티미디어 방송시장(디지털 케이블+위성 방송+IPTV)의 33% 점유를 소수안으로 제시(국무 조정실 보도자료, 2007.4.6)

▶ 법제화

- 국회 방통특위는 ‘시장점유율 제한 기준을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제안
- 이후 제12차 방통특위에서 일부 의원의 수정요구를 반영하여 유료방송 사업 가입 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조건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IPTV 도입에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이 법이 시행된 후 1년 이내에는 5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단서 규정을 포함하기로 함(방송 통신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07.11.20)

◎ 시장점유율 제한을 받는 사업자의 정의

- ▶ IPTV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IPTV 제공사업자를 합산하여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음
- ▶ 특수관계자의 적용 법령과 범위
 -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법 제8조의 겸영금지와 동일하게 방송법시행령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 ※ 제6조(겸영금지 등)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자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특수관계자의 범위

- ※ 1. 임원
 - 2.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3. 단독 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등과 합하여 30% 이상을 출자/출연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등
 - 4. 단독 또는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하여 30% 이상을 출자/출연 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 시장점유율 규제의 대상이 되는 시장은 유료방송사업

▶ IPTV법은 유료방송사업이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사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함

- 이는 기존 유료방송 시장이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식한 선례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 공정위의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동일시장 판단 기준
 - 양 매체가 모두 다채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료방송사업이라는 점
 - SO와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한정된 시청자를 대상으로 신규 가입자 확보 및 기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
 -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중 어느 하나에만 가입하고 있다는 점
 - 기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가 위성방송에 가입하는 경우 대부분 종합유선방송을 해지한다는 점

◎ 시장점유율 제한 범위

▶ IPTV 제공사업자는 방송구역별로 유료방송사업 가입 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 방송법 제12조(지역사업권)는 종합유선방송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는 일정한 방송구역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지역사업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 방송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 통신설비 등을 참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종합유선방송의 방송구역은 77개임

- ▶ 다만, 법 시행된 후 1년 이내에는 5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시장점유율 제한 위반 시의 시정명령

- ▶ IPTV 제공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의 3분의 1(법 시행 후 1년 이내에는 5분의 1)을 초과하여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방통위가 해당 사업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 ▶ IPTV 제공사업자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통위가 해당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법제24조제1항 제3호)

(4)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 제14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자기 보유 설비의 부족, 영업비밀의 보호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용 중인 자기 보유설비의 사용 등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자기 보유설비를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범위, 설비제공의 거절·중단·제한 사유, 설비제공의 방법·절차 및 설비 이용대가의 산정원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 의

- ▶ IPTV 제공사업에서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와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를 제공·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논의 및 법제화 과정

- ▶ 용추위 논의
 - 용추위는 모든 사업자에게 네트워크 동등접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다수안으로, 일정 유예기간 후 일정 규모 및 시장점유율 이상 사업자 또는 필수설비 보유 사업자에게 네트워크 동등접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소수안으로 제안

▶ 법제화

-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 보유 설비의 부족, 영업비밀의 보호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 필수 전기통신설비의 정의, 설비 제공 거절 사유, 설비제공 방법·절차 및 설비 이용대가의 산정원칙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시행령은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통위가 고시하도록 함

◎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제도 개요

- ▶ 전기통신설비 제공 개념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통신 사업에서는 타 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조기에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하여 경쟁 활성화를 도모
 - 반면, 방송사업은 대부분 자신들이 설비를 보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타 사업자에게 자신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음
 - IPTV법의 전기통신설비 동등 제공은 다양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는 통신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 ※ 예1) 전기통신사업법은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하였거나 기간통신역무의 사업 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설비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IPTV법은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모든 사업자에게 설비의 동등 제공 의무를 부과
 - ※ 예2) 전기통신사업법에서의 제공대상 설비는 '선로설비와 전용회선'이나(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방통원고시 제2008-68호) IPTV사업법에서의 제공대상 설비는 '선로기반설비와 가입자선로공용설비'임(설비고시 제5조 ②, 제6조 ①)

- ▶ 전기통신설비의 동등 제공은 사업자간 자율적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에게 맡겨둘 경우 이해의 차이 때문에 경쟁사업자에게 원활한 설비제공이 힘들 수 있음
 - 이에 필수적인 설비에 한정하여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다만 합리적 사유로 제공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IPTV법의 전기통신설비 동등 제공 제도의 취지임
- ▶ 제공 사업자 : IPTV 제공사업자 (IPTV 제공사업자가 아닌 통신 사업자는 이러한 의무가 없음)
- ▶ 요청 사업자 : IPTV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실제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IPTV 제공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함)
- ▶ 동등제공 대상설비 : IPTV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 (타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음)
 - ※ 필수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의 제공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름

◎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원칙과 예외사항

- ▶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원칙
 - IPTV 제공사업자는 IPTV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자기 보유설비의 부족, 영업비밀의 보호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함
 - ※ 필수설비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대설비의 제공은 설비사업자와 이용 사업자의 협의에 따름
 - IPTV 제공사업자는 자기 보유설비를 다른 IPTV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됨

-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비의 적기 제공과 제공된 설비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함(설비고시 제4조)
 - 설비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필수설비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자료조사에 협조해야 함(설비고시 제8조제1항)
- ▶ 예외사항(시행령 제12조제3항, 제4항)
-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거절, 중단,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설비사업자가 설비제공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설비고시 제8조제3항)
- ※ 관련 용어 정의(시행령 제12조제1항, 설비고시 제3조)

용 어	정 의
필수전기통신설비	•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필요한 설비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비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그 설비를 직접 구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대체설비를 이용하게 될 경우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공정한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설비
설비사업자	• 설비제공 요청을 받고 해당설비를 제공하는 제공사업자
이용사업자	• 설비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하는 제공사업자
선로기반설비	• 동선 · 광케이블 · 동축케이블 등을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주 · 관로 · 통신구 등과 그 관련 설비
가입자선로공용설비	•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등과 일정 부분의 대역폭을 나누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
디지털가입자망	• 동선 또는 광케이블로 구성된 가입자선로에 집선스위치, 전송 장비 등을 부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입자망
광동축혼합망	•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이 혼합된 가입자선로에 집선스위치, 전송장비 등을 부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HFC(Hybrid Fiber Coaxial) 방식의 가입자망
전용회선	• 이용사업자의 설비가 설비사업자의 국내 집선스위치에 접근 하기 위한 회선설비
접속지점	• 설비사업자 및 이용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설비의 물리적 경계지점

◎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대상설비

- ▶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대상 설비는 필수전기통신설비임
- ▶ 필수전기통신설비는 선로기반설비와 가입자선로공용설비로 구분(설비 고시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구 분	선로기반설비	가입자선로공용설비
의 미	•이용사업자가 설비사업자의 개별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설비	•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등과 일정 부분의 대역폭을 나누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대상설비	1. 전주 2. 관로 중 운용중인 관로와 별표에서 규정한 예비관로를 제외한 설비 또는 별표 특칙에 따른 내관 1공 3. 통신구 4. 인공(Manhole) 5. 수공(Handhole) 6. 배관 7. 배선반 8. 가입자선로공용설비(디지털가입자망과 광동축혼합망)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국사상면	1. 디지털가입자망 2. 광동축혼합망 ※ 이용사업자의 설비가 설비사업자의 설비에 접근하기 위한 접속지점은 가입자측 최초 국사 내 집선스위치로 함 ※ 설비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접속스위치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전용 회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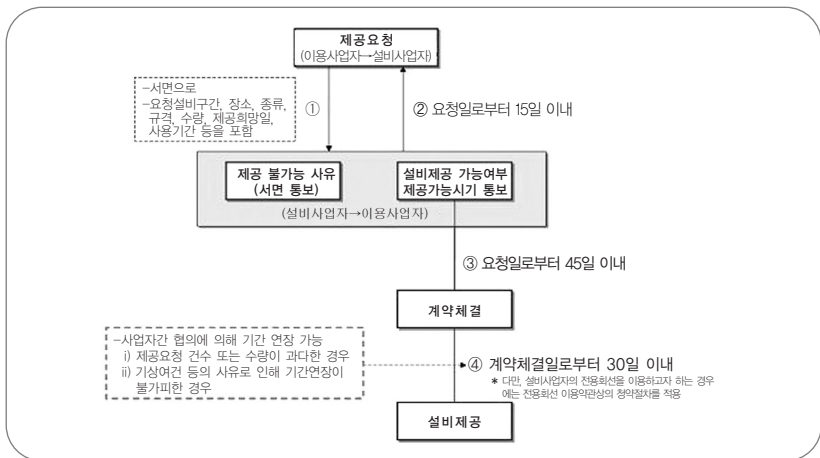
◎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 ▶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실행
 - IPTV 제공사업자는 자기 보유설비를 다른 IPTV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됨(법 제14조제3항)
- ▶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의 거절, 중단, 제한 사유 (시행령 제12조제3항, 제4항)
 - IPTV법은 설비제공의 거절사유를 규정 : 자기 보유설비의 부족,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제14조제1항)
 - IPTV법은 설비제공의 중단, 제한 사유를 규정 :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필요 (제14조제2항)

- 설비제공 거절 및 중단, 제한사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며,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상세 규정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설비제공의 중단, 제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전기통신설비와 접속하는 설비가 기술 기준이나 국가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기술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하는 사업 운영에 현저한 손실이나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설비의 재설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할 여유설비 또는 여유용량이 부족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기술적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설비의 접근·이용을 요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설비개선을 위한 공사계획이나 설비 이전계획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 전기통신 설비제공의 절차



◎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조건

▶ 사용 범위

- 설비를 제공받은 이용사업자는 해당 설비를 허가받은 사업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함
- 이용사업자는 제공받은 설비를 제3자에게 동일한 형태로 다시 제공해서는 안됨

▶ 제공설비의 사용기간

- 설비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설비의 최소 사용기간은 1년임
- 이용사업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연장요청을 할 수 있음

▶ 유지보수책임

- 제공된 설비의 대·개체 및 유지보수는 설비사업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밀누설의 금지

-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설비제공으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자신의 영업정보로 활용하여서는 안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2조 제2호). 그리고, 제3자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함(동법 제2조제3호)

▶ 손해배상책임

- 제3자에 의해 제공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설비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협의하여 원인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함

-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수준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름
- 그러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설비가 손상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제공설비의 이전

- 설비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제공 중인 설비를 3개월 내에 이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사업자간 협의함
 - ※ 1. 설비사업자의 설비의 폐쇄 또는 이전으로 인해 제공설비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 2. 자연재해로 인한 국사붕괴 또는 도로유실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발생으로 인해 제공설비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 전기통신설비 이용대가 및 정산

▶ 이용대가의 산정 원칙

- 전기통신설비의 이용대가는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원가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함
 - ※ 제공대상설비의 원가는 재무회계상의 회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
- 이 경우 원가는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감가상각비, 투자보수비 및 운영 비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함

▶ 원가의 산정 원칙

- 원가의 산정은 합리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술발전 추세와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이용사업자 등 관련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2년마다 재산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원가의 범위와 산정방법

- 제공대상설비 원가의 범위는 감가상각비, 운영비용 및 투자보수의 합으로 함
- 가입자선로 공용설비의 원가의 산출방법
 - 1) 방송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점유하는 구간의 원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대역폭(각 사업자 대역폭의 합계)에서 사업자별 대역폭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여 산정
 - 2) 방송프로그램이 비상시적으로 점유하는 구간의 원가는 해당 사업자의 가입자 수의 비율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여 산정
- 전용회선의 이용요금은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전용회선 이용약관에 규정된 요금을 준용
- 선로기반설비의 이용대가는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음
- 이용사업자는 설비 제공을 위하여 설비사업자가 사무처리, 시설 검토 및 설비제공 등을 수행하는데 따른 일회성 비용(접수비, 시설검토비, 설치비, 철거비, 품질시험비, 작업완료통보비 등)을 부담
 - ※ 다만,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음
 - ※ 이용사업자는 설비사업자가 도급업체에 지불하는 비용 또는 설비사업자가 직접 수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설비 정산하며, 해당 설비의 이용대가에 대한 최초 정산시 일괄 정산함

▶ 이용대가의 정산

- 이용대가는 매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이용대가의 정산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함
 - 1) 정산주기에 관한 사항

- 2) 이용대가의 청구 및 지불에 관한 사항
- 3) 연체이자에 관한 사항
- 4) 이의제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정산에 필요한 사항

(5) 이용자 보호(이용약관, 요금규제 등)

제15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에 관한 이용요금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 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의 의

- ▶ 요금규제는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이용조건에 대한 규제와 이용요금에 대한 규제로 구분됨
- ▶ IPTV법에서는 이용조건(이용약관)에 대해서는 신고(변경신고 포함),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제를 도입

◎ 논의 및 법제화 과정

- ▶ IPTV에 대하여는 신규 융합서비스로서 규제완화 논의도 있었으나 방송법의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와 동일하게 규정됨
 - ※ 방송법 제77조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①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요금규제 사례 분석

▶ 통신서비스 요금규제와의 비교

구분	통신서비스		유료방송	IPTV
규제수준	이용약관 신고	이용약관 인가	이용약관 : 신고 이용요금 : 승인	이용약관 : 신고 이용요금 : 승인
규제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IPTV제공사업자
관련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방송법 제77조	IPTV법 제15조
대상 서비스	인가대상 역무외 서비스	서비스별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총매출액에 대한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방통위가 서비스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 [※]	케이블TV서비스 위성방송서비스 음악유선방송서비스	IPTV제공 서비스

※ 고시에 따르면, ①KT 시내전화와 구내전화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②SKT 이동전화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데이터 요금, ③KT 인터넷접속(인터넷전화선 제외) 서비스 이용료(무선랜 제외), 가입설치비 등이 인가대상임

▶ 해외사례

- 일본의 IPTV서비스인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의 이용약관(이용요금 및 제공조건) 규제는 신고임(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제13조제1항)

◎ 이용요금 승인 절차

- ▶ 요금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방통위에 제출
- ▶ 승인 받은 요금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구 내용 대비표를 포함하여 제출

▶ **방통위는 승인 전에 미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필요**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 (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용자 보호)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서비스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취득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개별 이용자 정보의 부당한 제공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 조치 준수**

▶ IPTV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해야 함

※ 타 입법 예 : 소비자기본법 제19조제5항은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전기통신 사업법 제33조제2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이용자로 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서비스나 전기통신설비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취득한 개인 정보는 본인의 동의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공개하여서는 안됨

- ▶ 만약 IPTV제공사업자가 개별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여 이용자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함
- ▶ 이외에도 IPTV 제공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 또한 본인의 동의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취득한 개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타 입법 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본인의 동의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동법 제7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 금지행위

제17조 (금지행위)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절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6.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서비스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주, 관로, 통신구 등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의 의

- ▶ IPTV 시장에서 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행위가 도입되었으며, 금지행위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 IPTV법은 금지행위 유형을 7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행위 유형 및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함
- ▶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반면, IPTV법의 금지행위는 IPTV 제공사업자에게만 적용됨

- ※ IPTV 제공사업에서 선발자의 이익 확보와 기존고객과 신규 고객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금지행위가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임

◎ 논의 및 법제화 과정

▶ 제도 관련 논의

- IPTV법의 금지행위 규정은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삭제를 요구하는 주장도 있었으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존치하기로 함

▶ 법제화

- 법 제정과정에서 제17조제1항의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대해서는 삭제 요구가 있었으나 본안대로 통과됨
 - ※ 방통특위 일부 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를 감시·감독 조치하기 위한 특별한 권한이 있고, 계좌추적권, 소환권, 조사권, 자료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며, 방통위가 이에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삭제를 요구

◎ IPTV법의 금지행위 제도의 특성

- ▶ 방송법은 IPTV법과 같은 금지행위 규제를 도입하지 않아 IPTV 제공 사업에만 적용됨
 - ▶ IPTV법의 금지행위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상당부분 유래 하였으나 IPTV에 특화되어 도입됨
 - ※ 예) IPTV 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역무 또는 방송역무의 결합판매 관련 규정과 IPTV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등은 IPTV 사업법에 특화된 규정임
-

◎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시행령 별표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세부 참조)

- ▶ 서비스 제공 거부 행위
 - IPTV 제공사업자의 해당 사업구역에서 특정 이용자의 IPTV 서비스 이용 요청을 설비의 부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하거나, 요금의 체납 등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IPTV 서비스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IPTV 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역무 등과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에 IPTV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 ▶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요금 청구행위
 - 이용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부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금을 청구하는 등 해당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
- ▶ 이용자 정보의 부당한 유용행위
 - IPTV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 ▶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IPTV 서비스의 이용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장비 등을 다른 이용자보다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등
 - IPTV 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역무 또는 방송역무 등과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에 IPTV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이용자보다 현저히 부당하게 지속적으로 차별하여 유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IPTV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IPTV 제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IPTV 콘텐츠사업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등 IPTV 콘텐츠 사업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IPTV 콘텐츠사업자에게 다른 IPTV 제공사업자와의 콘텐츠 공급계약 체결을 거부 또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현저히 불리한 수익 배분이나 정상적인 관행보다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현저한 경제상의 손해를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 다른 IPTV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IPTV 제공사업자의 시설이나 장비를 파손하는 등 부당하게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 다른 IPTV 제공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가입자 전환 지연, 부당 유인, 과도한 이익의 제공 등을 통하여, 또는 IPTV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제공 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부당하게 이용자와 다른 IPTV 제공사업자의 IPTV 서비스 제공을 배제하는 내용의 배타적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접근의 거절·중단·제한 행위등
 - 다른 IPTV 제공사업자가 그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또는 접근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체결된 계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다른 IPTV 제공사업자가 계약 등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단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

- 정당한 이유없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IPTV 제공사업자가 이용하는 것과 차별적인 가격이나 이용조건을 제시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법]

제17조 (금지행위)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 100분의 2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생략

[시행령]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 ④ 생략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령 제13조제2항 관련 별표2)

- ▶ 금지행위시 방통위는 해당 IPTV 제공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매출액 기준은 “해당 IPTV 제공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 ※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시행령 제13조제1항)
-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시행령 제13조제2항 관련 별표2)

위반행위 종별	과징금 상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거부행위 •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요금 청구행위 •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매출액의 1000분의 1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정보의 부당한 유용행위 	매출액의 1000분의 1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접근의 거절·중단·제한 행위 	매출액의 1000분의 2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때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 이하

◎ 과징금 부과절차 및 납부 (시행령 제14조 참조)

- ▶ 방통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 ▶ 방통위로부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통위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 납부
 -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함

◎ 과징금 징수 (법 제17조제3항 참조)

- ▶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방통위가 징수함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1) 콘텐츠 발전시책

제19조 (콘텐츠사업 발전시책 등) 정부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콘텐츠간의 공정 경쟁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마련 등 콘텐츠사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의 의

- ▶ 콘텐츠 사업은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대표적인 신성장동력이자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콘텐츠의 발전이 다매체·다채널 방송통신 서비스의 발전을, 다시 방송통신 서비스의 발전이 콘텐츠의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 발전구조’의 확립이 요청됨
- ▶ 이러한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여 법 제19조는 정부의 콘텐츠사업 발전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주요 정책방향으로 1) IPTV 제공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콘텐츠 간의 공정경쟁 확립과 2) 콘텐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원 마련 등을 제시함

◎ 논의 및 법제화 과정

- ▶ 용추위의 「IPTV 도입 정책방안」의 논의 과정에서 IPTV 사업의 도입이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됨

- ▶ **용추위 9차 전체 회의(2007.3.22)에서 IPTV 도입을 위한 5대 정책방향 중의 하나로 '콘텐츠의 육성·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할 것'을 합의함**
 - ※ 용추위 IPTV 도입의 5대 기본원칙
 1.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우선한다
 2. 콘텐츠의 육성·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한다
 3.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4. 방송이 갖는 공익성은 보호되어야 한다
 5. 공정경쟁의 여건을 조성한다

- ▶ **용추위 11차 전체회의(2007.4.5)에서 콘텐츠 육성·발전 방안으로 IPTV 사업자의 허가 심사기준에 콘텐츠 활성화 의무를 포함할 것, 콘텐츠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의 근거를 명시할 것 등을 다수안으로 채택함(「IPTV 도입 정책방안 보고」, 2007.4.12)**

◎ IPTV 제공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공정경쟁의 조성

- ▶ **아울러 제19조는 콘텐츠 발전시책의 정책적 목표 중 하나로 IPTV 제공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콘텐츠 간의 공정경쟁을 명시하고 있음**

- ▶ **현재 콘텐츠 시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들 간에 인기 콘텐츠의 공급·수요 독점 및 배제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방송법」에서는 이러한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함**
 - 「방송법」 제76조제1항은 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규정 및 위반시 제재규정이 부재함
 - ※ 다만, 「방송법」 제76조제2항~제5항에서 방통위가 고시한 "국민관심행사"에 국한하여 해당 행사의 중계방송권자가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을 위하여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중계방송권을 적정가격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 콘텐츠의 공정거래 및 이를 통한 사업자 간 공정경쟁의 조성을 위하여, 법은 제19조 외에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제20조)를 통하여 IPTV 콘텐츠 사업자와 IPTV 제공사업자간 콘텐츠 공급관련 공정거래 환경을 도모함
- ▶ 또한, 방송·통신 융합,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방송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방송콘텐츠 환경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이자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콘텐츠 산업의 진흥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시행 의무가 요청됨

◎ 콘텐츠 관련 산업의 진흥 지원

- ▶ IPTV 사업 도입방안 및 콘텐츠 진흥시책에 관한 용추위 및 국회 방통 특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법은 정부의 콘텐츠사업 발전시책의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한 제14조 외에도 콘텐츠 진흥의 정책방향 구현을 위해 아래의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 IPTV 제공사업자의 허가 심사항목 중에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마련함(제4조제4항)
 - IPTV 사업 진흥 및 이용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IPTV 제공사업자가 방송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3조)

(2) 콘텐츠 동등접근

[법]

제20조(콘텐츠 동등접근)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시한 경우(이하 “주요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계약 행위 등에 있어 시청자의 이익 및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청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19조(콘텐츠 동등접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2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1.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지 여부
2.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3.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접근·이용 또는 거래를 거절·중단 및 제한할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

◎ 의 의

- ▶ 다매체·다채널 방송 환경에서 1) 사업자간 공정경쟁의 풍토를 조성하고
- 2) 일반 국민들이 주요 방송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IPTV 콘텐츠사업자들은 IPTV 사업자들에 대해 차별 없이 공정 거래를 통하여 콘텐츠를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문화함

- ▶ IPTV 콘텐츠사업자들이 공급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주요 방송프로그램)을 IPTV 제공사업자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접근·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의 후발주자인 IPTV 제공사업자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그간 위성방송, 위성 DMB 등 새로운 유료 TV매체들이 등장 하면서 신규 매체 사업자들이 일부 지상파 채널 혹은 PP 채널에 대한 접근을 거부 당하여 유료방송서비스 시장 내에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있었음
 - 유료방송서비스시장에 신규 진입한 특정 IPTV 제공사업자가 인기채널의 배타적 거래행위로 인하여 기존 방송사업자들로부터 콘텐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함

◎ 콘텐츠 동등접근에 관한 미국의 규제 사례

- ▶ 1992년 FCC는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서 특정 방송사업자가 인기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독점함으로써 다른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접근 규칙(Program Access Rule, PAR)을 제정, 지금까지 이를 시행해오고 있음
 - 연방의회는 1992년 「케이블TV 가입자보호 및 경쟁에 관한 법」(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을 제정하여 수직결합된 케이블TV 사업자(SO)와 프로그램 공급사업자(PP)에 의한 프로그램의 배타적 거래행위를 금지하였음
 - 이에 따라 당시 「커뮤니케이션법」에(현재는 「텔레커뮤니케이션법」) 다채널 비디오 편성배급(Multichannel Video Programing Distribution)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다양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 규제조항(제628조)이 신설되었음

- 이 조항에 의거하여 FCC는 1992년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PAR를 제정하였으며, 이후 2002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5년씩 시한을 연장하였음
- IPTV 제공사업자 또한 기존의 다채널 방송사업자(케이블TV의 SO, 위성 방송사업자 등)와 마찬가지로 “다채널 비디오편성 배급사업자”로 분류되어 PAR의 적용대상이 됨

◎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고시

- ▶ 시청자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방통위는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IPTV 콘텐츠사업자가 공급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중에서 “주요 방송 프로그램”을 결정해 이를 고시할 수 있음
 - IPTV 콘텐츠사업자들은 방통위가 고시한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모든 IPTV 제공사업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공급하여야 함
 - 비록 신규매체인 IPTV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법 제20조는 IPTV 제공사업자가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범위를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중 방통위가 지정하는 주요 방송프로그램 으로까지 확대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 ※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요 방송프로그램은 방통위가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으로 정의한 채널임
- ▶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함(시행령 제19조)
 -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또는 시청 점유율)이 방통위가 정한 비율 이상인지 여부
 -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접근·이용이 거절, 중단, 혹은 제한될 경우 IPTV 제공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지의 여부

(3) 방송프로그램의 구성·운용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

◎ IPTV 제공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금지

- ▶ IPTV 제공사업과 IPTV 콘텐츠사업을 명확하게 분리하기 위하여 IPTV 제공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함
 - 반면, 방송법은 다채널 방송사업자(SO·위성방송 등)에게 직접 사용 채널 운용을 허용하되, 제공범위를 제한함
 - 기존의 다채널 방송사업자(케이블TV의 SO, 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 DMB 사업자)에 적용되는 「방송법」의 직접사용채널 운용 제한 조항(제70조제2항)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정
 - ※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다채널 방송사업자들의 직접사용 채널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을 두고 있음(「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 1. 지상파 DMB 사업자 : 특수관계자에 임대하는 채널과 합쳐 3개를 초과하지 못함(데이터 방송채널을 포함하는 경우 4개까지)
 - 2. SO 사업자 : 3개를 초과하지 못함(전체 운용채널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성방송 사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한)
 - 3. 위성방송 사업자(위성 DMB 사업자 포함) : TV 방송채널과 라디오 방송채널은 각각 10%(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는 1개), 데이터 방송채널은 30%(운용하는 데이터 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는 1개)까지로 제한
- ▶ 직접사용채널 운용금지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한함
 - VOD는 직접 제공 가능

[법]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에 대하여는 「방송법」 제32조, 제33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시행령]

제20조(「방송법 시행령」의 준용)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

- ▶ IPTV 콘텐츠사업자가 공급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는 현행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제33조(심의규정), 제100조(제재조치 등)를 준용함
 - 방통위는 IPTV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영 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방송법」 제32조제1항 준용)
 - 방통위는 IPTV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중 특별히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를 실시하여 방송 여부를 의결할 수 있으며(「방송법」 제32조제2항 준용), IPTV 콘텐츠사업자는 심의대상 방송광고에 대하여 방통위의 심의·의결한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는 것을 금함(「방송법」 제32조제3항 준용)
 - ※ 헌법재판소는 방통위의 방송광고 사전심의권한을 규정한 「방송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위헌을 판결함(2005헌마506, 2008.6.26)

◎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 ▶ 방통위가 제정·공표한 방송심의규정이 IPTV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도 적용됨(「방송법」 제33조 준용)
 - ※ 방송심의규정은 「방송법」의 관련규정(제33조제2항제1호~제11호)에 따라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제1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제3호),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제4호), “양성평등”(제5호),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제8호),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제9호) 등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함
- ▶ IPTV 콘텐츠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 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함(「방송법」 제33조제3항 준용)
 - 방송프로그램의 등급 분류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르며, 방통위는 IPTV 콘텐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방송법」 제33조제4항과 제5항 준용)
- ▶ 방통위는 IPTV 콘텐츠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이 경미한 경우에는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심의규정 위반이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빚어진 경우 IPTV 콘텐츠사업자는 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방송법」 제100조제1항과 제2항 준용)
 - ※ 「방송법」에서 적시한 구체적인 제재조치는 아래와 같음(제100조제1항)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 ▶ 방통위는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음(「방송법」 제100조제3항 준용)
 - ※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함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시청자에 대한 사과” 내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 ▶ 제재조치를 명령받은 IPTV 콘텐츠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명령 내용에 관한 방통위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하여야 함(「방송법」 제100조제4항 준용)
 - 방통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내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방송법」 제100조제5항 준용)
 -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제재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방통위는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방송법」 제100조제6항과 제7항 준용)

[법]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채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로 본다. 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시행령]

제20조(「방송법 시행령」의 준용)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규정(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1.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가목 중 “70개 이상으로 할 것”은 “70개 이상으로 할 것(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전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단위의 수가 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볼 것
- 2~5. 생략

◎ 논의 및 법제화 과정

- ▶ 융추위의 「IPTV 도입 정책방안 보고」(2007.4.12)는 IPTV 사업자를 전송과 채널의 구성·편성을 담당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하는 방식이 다수안으로 채택한 바 있음
 - 국회의 방통 특위는 이러한 견해를 고려하여 「방송법」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에 준하여 IPTV 사업자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을 규제하기로 합의함
- ▶ 법 제21조제3항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를 ‘채널’로 정의 하였는 바, 이에 근거하여 IPTV 사업자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구성·운용은 채널의 구성·운용을 가리키게 됨
 - 이러한 정의에 의거하여 케이블 TV의 SO에 의한 채널 구성·운용을 규제하는 「방송법」 조항(제70조제1항~제3항)을 IPTV 사업자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단위(채널)의 구성·운용에도 준용함

◎ IPTV 제공사업자의 채널 구성 및 운용

- ▶ IPTV 제공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

되도록 채널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방송법」 제70조제1항 준용), 아울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공공채널) 및 종교의 선교 목적을 지닌 채널을 운영하여 함(「방송법」 제70조제3항 준용)

- IPTV법 시행령(제20조제2항)에서 IPTV 제공사업자에 의한 1) 다양성 구현을 위한 채널의 구성·운영과 2) 공공채널과 종교채널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방송법 시행령」 제53조와 제54조의 일부를 준용)

▶ 관련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방송법 시행령」 제53조와 제54조의 일부를 준용)

- IPTV 제공사업자는 전체 운용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 할 것(「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가목을 준용)

- IPTV 제공사업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 종합편성을 행하는 IPTV 콘텐츠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해야 하며, 보도전문 IPTV 콘텐츠사업자의 채널을 2개 이상 포함하여야 함(「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나목과 다목을 준용)

- IPTV 제공사업자는 공공채널과 종교채널의 수를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하며, 종교채널의 경우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채널만 두어서는 아니됨(「방송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법]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④ 「방송법」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 제76조의3, 제76조의5,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78조의2는 콘텐츠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국내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 공급,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재송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로 본다.

[시행령]

제20조(「방송법 시행령」의 준용)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 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 IPTV 콘텐츠사업자의 특성

- ▶ IPTV 제공사업자가 전송 및 채널의 구성·운용의 사업영역을 지닌다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IPTV 콘텐츠 사업자는 채널 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콘텐츠 공급의 사업영역을 지님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IPTV 콘텐츠 사업자는 현행 케이블 TV의 규제체계에서 채널사용사업자(PP)와 유사한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IPTV 콘텐츠 사업자에 PP 뿐 아니라 지상파방송사업자, SO와 위성방송사업자(직접사용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IPTV 콘텐츠 사업자의 범위는 더욱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편성 규제

- ▶ IPTV 콘텐츠사업자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한 규제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를 준용함
 - 현행 「방송법」의 편성 관련규정은 방송사업자를 종합편성 방송 사업자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PP)와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전문편성 PP)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달리 규제하고 있음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IPTV 콘텐츠사업자 또한 「방송법」의 편성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종합편성을 행하는 사업자인지 전문편성을 행하는 사업자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리 규제함

- ▶ IPTV법 시행령(제20조3항)에서는 IPTV 콘텐츠사업자의 채널 내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세부지침으로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등을 준용함

※ 한국방송공사(KBS)의 경우 매월 100분 이상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함(「방송법 시행령」 제51조)

- ▶ 종합편성을 행하는 IPTV 콘텐츠사업자는 보도, 교양,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하며(「방송법」 제69조제3항 준용), 특히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로 편성하여야 함(「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을 준용)

※ 「방송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방송프로그램의 구분(제50조제2항)

1.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
2.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3.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 ▶ 전문편성을 행하는 IPTV 콘텐츠사업자는 허가·승인을 얻거나 등록된 주된 방송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TV 방송프로그램 또는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70% 이상을 편성하여야 함(「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나목을 준용)

[법]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④ 생략

[시행령]

제20조(「방송법 시행령」의 준용)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7조를 준용하되, 제16조 제2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의 비율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 IPTV 콘텐츠사업자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

- ▶ IPTV법 제21조제3항은 IPTV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사업자의 국내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에 관한 「방송법」 규정(제71조)을 준용하여 규제하도록 함
-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IPTV 사업자는 국민문화의 향상 및 방송산업 진흥을 위하여 「방송법」에서 규정한 방송사업자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를 준수하여야 함(「방송법」 제71조제1항 준용)
 - IPTV 콘텐츠사업자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은 해당 사업자가 「방송법」에서 규정한 방송사업자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제71조제4항), 구체적인 기준은 「방송법 시행령」 및 방통위의 고시를 따름
 - ※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 중 아래의 범위 내에서 고시하는 방통위의 비율 이상으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함(「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1. 지상파 방송사업자(지상파 PP 포함): 60% 이상 80% 이하
 2. SO 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40% 이상 70% 이하
 3. PP 사업자(지상파 PP는 제외): 20% 이상 50% 이하

-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IPTV 사업자는 국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방송법」에서 규정한 방송사업자의 국내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편성의무를 준수하여야 함(「방송법」 제71조제2항 준용)
 - ※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것을 아래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함(「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1. 영화: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20% 이상 40% 이하
 2. 애니메이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30% 이상 50% 이하
 3. 대중음악: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50% 이상 80% 이하
 - ※ 종교 및 교육 전문편성 PP에 대한 예외규정: 해당 분야의 특성상 국내제작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이 희소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무편성 비율을 해당 채널의 연간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방통위가 고시한 비율 이상으로 함(「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 ▶ IPTV 콘텐츠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경우,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신규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적용됨(「방송법」 제71조제2항 준용)
 - ※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지상파 방송사업자(MBC),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 방송사업자(SBS)는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 이상 편성하여야 함(「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 ※ 기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우: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의무편성 비율을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1.5% 내에서 방통위가 고시한 비율 이상으로 함(「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 ▶ 또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IPTV 콘텐츠사업자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것이 각 분야별로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함(「방송법」 제72조제4항 준용)
 - ※ 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매분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 음악의 방송시간 각각에 대하여 한 국가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방통위가 고시한 비율(60% 이내에서 결정)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법]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④ 생략

[시행령]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 IPTV 콘텐츠사업자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

- ▶ IPTV 콘텐츠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지상파PP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법」에서 규정한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를 IPTV 채널의 시간적 편성에도 적용함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가리킴(「방송법」 제72조제1항)
- ▶ 방송내용의 다양성 구현 및 독립제작사를 통한 방송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송법」(제72조제1항)은 방송사업자에게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함
 - 방송매체 및 방송분야별 특성에 따라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비율은 차등을 둘 수 있으며(제72조제4항),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지상파 PP 포함)에 한정하여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 ※ 지상파 방송사업자(지상파 PP 포함)는 해당 채널의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 시간의 40% 이내에서 방통위가 고시한 비율 이상으로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함(「방송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 ▶ IPTV 콘텐츠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지상파PP 포함)인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외주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방송법」 조항(제72조제2항)을 IPTV 채널의 편성에도 준용함
 - 이는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을 감안하여, 해당 방송사가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의 대부분을 자회사의 제작물로 채우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임
 - ※ 지상파 방송사업자(지상파 PP 포함)는 전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30% 범위안에서 방통위가 고시한 비율을 초과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지 못함(「방송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 ▶ IPTV 콘텐츠사업자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인 경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청률이 높은 “주시청시간대”에 별도의 제한을 둔 「방송법」 조항(제72조제3항)을 IPTV 채널의 편성에도 준용함
 - 주시청시간대는 평일의 경우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함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 ※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분기 주시청 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5% 이내에서 방통위가 고시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함(「방송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법]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④ 생략

[시행령]

제20조(「방송법 시행령」의 준용) 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광고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및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광고의 허용범위 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⑦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협찬고지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 IPTV 콘텐츠사업자의 방송광고 규제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IPTV 콘텐츠사업자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방송법」(제73조) 및 「방송법 시행령」(제59조)의 방송광고 관련 규정을 준용함

※ IPTV 콘텐츠 사업자가 1)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아니면서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거나, 2) 「방송법」상 보도전문·홈쇼핑 PP가 아니면서 해당분야의 콘텐츠를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자인 경우(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해당), 케이블TV의 PP(케이블TV의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에도 동일한 규제 적용)에 준하여 규제함

▶ IPTV 콘텐츠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 시간, 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표기하여야 함(「방송법」 제59조 제1항을 준용)

※ 방송광고의 종류(「방송법」 제73조제2항)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 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아울러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 ▶ IPTV 콘텐츠사업자의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는 제외)의 허용범위 · 시간 · 횟수 또는 방법은 해당 사업자가 「방송법」에서 규정한 방송사업자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리 규제함(「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준용)
 - 지상파 방송사업자(지상파 DMB 사업자는 제외),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 지상파 PP(지상파 DMB PP는 제외)의 TV 채널 및 라디오 채널의 경우는 아래의 기준을 따름

방송프로그램 광고	전체 방송프로그램 시간(광고시간 포함)의 10% 초과 금지	
중간광고	금지(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는 예외로 함)	
토막광고	횟수	라디오 :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4건 이내 TV :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4건 이내
	회당 시간	라디오 : 1분 20초 이내(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5분 이내) TV : 1분 30초 이내
자막광고	횟수는 매시간 4회 이내, 회당 시간은 매회 10초 이내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 이내	
시보광고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지상파 TV는 매일 10회 이내)	

- SO 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위성 DMB 사업자 제외), PP 사업자(지상파 및 위성 DMB PP는 제외)의 TV채널 및 라디오채널의 경우는 아래의 기준을 따름

채널별 광고시간	시간당 평균 10분 초과금지, 매시간 12분 이내 (방송프로그램이 120분 이상인 경우: 당해 시간의 전체 광고시간이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15%를 넘지 않으면 매시간 15분 이내)
중간광고	방송프로그램이 45분 이상 60분 미만(광고시간 포함)이면 1회 이내, 방송프로그램 시간이 30분 증가할 때마다 횟수 한도가 1회씩 증가 방송프로그램이 180분 이상이면 6회 이내 매회 3건 이내, 회당 시간은 1분 이내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음)
토막광고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5건 이내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40초를 초과할 수 없음
자막광고	횟수는 매시간 6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 이내

※ 기타 방송사업자(지상파 DMB 사업자, 위성 DMB 사업자, 지상파 DMB PP, 위성 DMB PP)의 방송광고 규제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을 참고

▶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방송 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제73조)을 준용하여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IPTV 콘텐츠사업자에게도 적용함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 이내에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방송사업자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할 의무가 있으나, 방송 내용이 대부분 공익적인 내용인 채널로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채널은 예외로 함(「방송법시행령」 제59조제3항)

※ 비상업적 공익광고란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광고 또는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를 지칭함(「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 IPTV 콘텐츠사업자의 협찬고지 규제

▶ IPTV 콘텐츠사업자(「방송법」에서 규정한 방송사업자가 아니면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는 사업자는 제외)의 협찬 고지에 대해서는 방송법령의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규제함(「방송법」 제74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과 엄격히 분리되는 방송광고와는 달리 방송 프로그램에서 화면이나 음성으로 고지되는 형식을 취함

- 협찬고지는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뜻함(「방송법」 제2조제22호)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IPTV 콘텐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찬고지를 행할 수 있으며(「방송법」 제74조제1항 준용),

협찬고지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은 방통위 규칙으로 정함(「방송법」 제74조제2항)

※ 방송사업자의 협찬고지가 허용되는 경우(「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1.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2. 방송사업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
3. 방송사와 특수관계가 아닌 방송프로그램 제작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협찬하는 경우
4.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시상품 또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장소·의상·소품·정보 등을 협찬하는 경우

-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내에 있더라도, 방송의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협찬고지를 금하는 경우가 존재함

※ 방송사업자의 협찬고지가 금지되는 경우(「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1. 정당 등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방통위 규칙에 의하여 방송광고 금지품목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3.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협찬하는 경우

※ 단, 아래의 두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방송사업자의 협찬고지가 허용됨

1. 방송광고 금지품목을 다루는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이 공익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2.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시사·보도 방송 프로그램을 협찬하는 경우(수도권 지상파방송사는 라디오 프로그램만 해당,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모두 해당)

[법]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④ 생략

[시행령]

제20조(「방송법 시행령」의 준용) ⑧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로 본다.

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재송신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본다.

⑩ 외국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통한 국내 재송신 승인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각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본다.

◎ IPTV 콘텐츠사업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 IPTV 콘텐츠사업자(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는 사업자는 제외)는 방송사업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규정한 방송법령을 IPTV 사업에도 준수하여야 함(「방송법」 제76조와 제76조의3 및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부터 6 준용)

-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함 (「방송법」 제2조제25항)
- 「방송법」에서는 방통위가 고시하는 “국민관심행사”(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의 중계방송권자는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함(제76조제2항과 제3항)을 규정하고 있음

- ▶ 「방송법」 조항의 준용에 의하여 “방송사업자”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IPTV 콘텐츠사업자까지 포함하게 되며, 해당 IPTV 콘텐츠사업자가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권자인 경우 중계방송권을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다른 방송사업자 및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IPTV 콘텐츠사업자에게 적정 가격에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함
-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등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방통위는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음(「방송법」 제76조의3제1항과 제2항)
 - ※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관련된 금지행위 유형(「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1. 중계방송권자로서 국민 전체가구 수의 60% 이상 75% 이하 범위에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비율(올림픽이나 월드컵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가구 수의 90%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 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 IPTV 사업자의 재송신 관련규정

- ▶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일부 지상파 방송채널의 의무재송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IPTV 사업자에게도 적용하며, 이 경우 IPTV 사업자는 케이블 TV의 SO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방송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 준용)
- 방송법상 재송신은 특정 방송사가 자신의 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고 변경 없이 송출하는 것을 말함
 - ※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재송신의 유형을 동시재송신과 이시재송신으로 구분하며, 의무재송신은 동시재송신의 유형에 속함(「방송법 시행령」 제61조제4항과 제61조 제6항)
 1. 동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재송신함
 2. 이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 방송 프로그램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재송신함(24시간 이상 시차 필요)

- ▶ 현재 의무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은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 교육 방송공사(EBS)의 지상파 TV방송채널이며 라디오방송채널은 제외됨 (「방송법」 제78조제1항)
 - ※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복수의 지상파 방송채널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방통위가 고시하는 1개 채널에 한정하여 의무재송신 규정이 적용되며(「방송법」 제78조 제2항), 2002년 4월 방송위는 KBS 1TV를 의무재송신 대상으로 지정·고시함
- 의무재송신 대상채널(KBS 1TV와 EBS TV)을 자신이 운용하는 채널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방송사업자는 SO, RO 및 위성방송사업자(위성 DMB사업자 제외)이며(「방송법」 제78조제1항), IPTV 사업자의 경우 SO 및 RO에 준하는 것으로 봄

- ▶ 의무 동시재송신에 관한 저작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법」은 의무재송신 대상채널을 운용하는 방송사업자의 저작권 관련권리를 제한하는 특칙을 두는 바(「방송법」 제78조제3항), 이러한 제한이 역시 IPTV 사업부문에 적용됨
 - ※ 「저작권법」 제85조는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동시 재송신 대상인 방송채널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법」상의 권리가 적용되지 않음

- ▶ 「방송법」에서는 SO나 RO가 자신의 허가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을 재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역의 재송신”으로 불림)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78조제4항), 이 조항을 IPTV 사업자에 준용하여 적용함
 - 전국을 사업권역으로 하지 않는 IPTV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권역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예: 지역민방)의 방송채널 재송신시 승인 필요

◎ IPTV 사업자의 외국방송 재송신 관련규정

- ▶ 외국 방송사업자(방송법에 의하여 허가·등록 하거나 승인받지 않은자를 포함)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방송사업자 또는 IPTV 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려면 방통위의 승인이 필요함(「방송법」 제78조의2제1항 준용)
 - 재송신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 방송사업자는 “외국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 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지칭함(「방송법」 제78조의2제1항)

- ▶ 특정 외국 방송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계·송신하는 경우에는 재송신으로 보지 않음(「방송법」 제78조의2제1항 후단 준용)
 - ※ 외국방송의 재송신이 아닌 경우(「방송법 시행령」 제61조의3제1항)
 1. 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국제행사, 문화행사 또는 스포츠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중계 송신하는 경우
 2. 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보도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중계 송신하는 경우(1일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3.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자료화면이나 인용보도 형태 등으로 중계 송신하는 경우

- ▶ 방통위는 외국방송사업자의 승인신청을 접수하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방송법」 제78조의2제2항제1호), 국내방송 및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제2호),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적 필요성(제4호)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 승인받은 외국방송을 IPTV사업자가 재송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재송신 범위와 기준은 방송법령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규제함(「방송법」 제78조의2와 「방송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 준용)
 -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기준을 준용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는 TV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데이터방송채널 별로 각각 20% 이내로 제한함
 - ※ 외국방송의 재송신은 아울러 아래의 기준을 따라야 함

1. 1개 채널에서 2개 이상의 외국방송채널을 재송신하지 못함
2.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방송광고 삽입, 한국어 더빙, 방송시간 등의 변경을 가하지 않고 재송신해야 함
3. 외국방송사업자가 방통위에서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방송광고 삽입, 한국어 더빙 등 변경을 가하거나 승인조건을 벗어나는 방송을 행할 시 재송신하지 말 것(단, 한국어 자막방송은 변경으로 보지 않음)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⑤ 재난방송에 대하여는 「방송법」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로 본다.

◎ IPTV 제공사업자의 재난방송 규정

- ▶ 현행 「방송법」의 재난방송 관련규정(제75조)을 준용하여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IPTV 제공사업자를 포함
 - ※ 재난방송의 요건으로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潮水)·대설·낙뢰·가뭄·지진(지진해일 포함)·황사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이 있음
 - 「방송법」은 재난방송 실시의 법적 의무를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와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한정하면서도(제75조제1항), 방통위가 재해·재난의 발생 또는 발생 예상시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75조제2항)
 - ※ 재난방송 관련 방송법령의 준용에 의하여 방통위가 재난방송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IPTV 제공사업자가 추가됨

5) 사업의 운영 · 관리

(1) 사업의 휴 · 폐지

[법률]

제22조(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의 의

- ▶ IPTV 사업자의 갑작스런 사업의 휴 · 폐지에 따라 이용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의 휴 · 폐지 전에 별도의 절차를 밟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 IPTV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될 경우 이용자는 방송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가 중단되는 시점에 이용자가 다른 대체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게 됨

◎ IPTV사업 휴 · 폐지 절차

- ▶ IPTV 제공사업자가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토록 함
 - 또한, 이러한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이용자 피해 대책이 부족할 경우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IPTV 콘텐츠사업자가 사업을 휴·폐지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토록 함
 - IPTV 콘텐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콘텐츠를 IPTV 제공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자이므로 IPTV 제공사업자가 다른 대체 채널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또한, IPTV 콘텐츠사업자는 IPTV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직접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이와 같은 규정은 기존 방송사업자의 휴·폐지 절차보다는 이용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 효과가 있음

◎ 타 법에서의 사업의 휴·폐지 절차

- ▶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의 휴·폐지 시 60일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전기통신사업법 제14조 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의 휴·폐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의 가입전환 대행 등)
 -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휴·폐지 시 공공의 이익이 저해된다고 판단할 경우 그 승인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음
 - 기간통신사업 휴·폐지 승인 신청시 제출 서류(동법 시행령 제24조)
 - 휴지·폐지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 관련 전기통신설비의 내역
 - 허가서 및 사유서

-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휴·폐지 예정일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 ▶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는 ‘폐업 및 휴업’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방송법 제84조제1항)
- IPTV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 달리 이용자 고지 의무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음

[사업자별 ‘휴지 및 폐지’ 관련 조항 비교]

사업자	IPTV 사업자/ 별정/부가통신사업자	IPTV 콘텐츠 사업자/방송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폐지/휴지 절차	신고	신고	승인
이용자 보호 조치	예정일 30일전 이용자 통보	의무 없음	60일 전 이용자 통보 (필요할 경우) 이용자 보호조치 부과/ 공익 저해시 승인거부 가능

(2) 사업자 출연(기금출연 등)

[법률]

제23조 (사업자의 출연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진흥 및 이용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방송법」 제36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귀속, 징수 및 배분비율,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1조(사업자의 출연)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방송법」 제36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허가받은 후 3년이 지날 때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발생한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재정 상태,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과 사업 운영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을 부과하려면 출연금의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밝힌 납부통지서를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납부기한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수납기관에 출연금을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의 의

- ▶ IPTV 제공사업자에게 허가에 따른 일부 수익을 방송발전기금으로 회수하여 방송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방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 제도를 도입

◎ 주요내용

- ▶ IPTV 제공사업자는 매년 IPTV 제공사업 매출의 6/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함
 - 출연금의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가 정해서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 예외 규정
 - IPTV 사업 초기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가입자 규모가 협소하여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인정되어 IPTV 제공사업을 허가받은 후 3년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타분야 사례

- ▶ 방송사업자 출연금 납부 대상 및 비율
 - 지상파 방송사업자 : 방송광고 매출액의 6% 이내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 당해년도 매출액 6% 이내
 - 홈쇼핑PP : 당해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 이내
- ▶ 전기통신사업자 출연금 납부 대상 및 비율
 - 납부 대상 및 규모 :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기간통신역무 매출액의 0.5%(단, 시장지배적사업자는 0.75%)
 - 단,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가를 납부한 사업자는 출연금이 면제됨
 - 출연금 경감 및 면제 제도
 - 면제 조건 :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 또는 당기 순손실 발생
 - 경감 조건 : 납부해야 할 출연금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당기 순이익의 70%만 납부

※ '08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유선통신 사업자에게 '09년부터 매년 0.1%p씩 경감하여 '13년에는 출연금을 완전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음

[사업자 유형별 '출연금' 제도 현황]

적용법률	IPTV 사업법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출연금 징수 대상	· IPTV 제공사업자 (IPTV 콘텐츠사업자 제외)	· 지상파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 홈쇼핑PP	· 기간통신사업자 · 별정통신사업자
출연금 징수 비율	· 연매출액 6% 범위	· 지상파 : 광고매출 6% 이내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 매출액 6% 이내 · 홈쇼핑PP : 영업이익 15% 이내	· 매출액 0.5%(시장지배적 사업자 : 0.75%)
출연금 면제	· 허가받은 후 3년간 면제		· 매출액 300억원 미만, 당기 손순실 사업자

(3)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법]

제24조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해당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
 2.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3.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서면 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의 의

- ▶ IPTV 제공사업자가 허가와 관련 중대한 위반을 하였거나 소유, 경영 및 시장점유율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이는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일반적으로 허가 등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임

◎ 허가취소 사유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이는 소유제한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분율에 관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인이 이를 회피는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초 정상적인 과정 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법인이 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임
 - 이러한 규정은 방송법 제18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 등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것임
-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임
 -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사업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는 매출 및 이익을 창출하는 한편 국가 경제적으로는 서비스 및 산업이 활성화 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
 - 따라서 사업권에는 사업자의 권리이자 의무인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자가 사업권을 받아놓고 무한정 사업을 지연하는 것은 국가경제적으로 폐해에 해당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 통상 IPTV사업권 부여시 부관(附款)으로 허가조건을 부여하게 되며, 동 허가조건에 사업개시일자를 명기하고 있음
 - ※ 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에게 2009년 3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한 바 있음
 - 한편, 방통위에 사업의 휴지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중지하였다고 해도 역시 무한정 사업을 보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허가 취소사유에 포함시킴

◎ 사업정지 사유

- ▶ 소유, 경영제한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짐(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4])
 - 뉴스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외국인이 IPTV 사업자에 대한 지분 소유 제한 범위(49%)를 초과하여 소유하여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방통위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짐(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4])
 -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방송구역에서 1/3을 초과하고,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25조 (과징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서 그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에 갈음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의 정지나 허가의 취소 사유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의 의

- ▶ 법 제24조에 따라 IPTV 제공사업자가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용자 이익이나 공익에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과징금 부과 같은 사유

- ▶ 그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과징금 부과 규모

- ▶ IPTV 제공사업 매출액의 3/100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의 정지나 허가의 취소 사유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규모 산정하며, 위반행위에 따른 구체적 과징금은 시행령 [별표 5]에서 기술하고 있음
 -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 매출액의 1000분의 20
 - 소유규제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매출액의 1000분의 15
 -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1000분의 10

(4) 벌칙 등

제26조 (시정명령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절차가 현저히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2. 사고 등에 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한 자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이용약관의 변경, 계약조항의 삭제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의 의

- ▶ IPTV사업자가 허가받은 IPTV사업을 영위하다가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한 방통위의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 방통위가 이에 대한 시정을 명령할 수 있음
- ▶ 이는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을 규율하는 법체계상 보편적인 행정작용임

◎ 개념의 정리

- ▶ 본장에서 다루는 행정상 벌칙의 내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 및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 ▶ 세부내용은 각각 설명하며 구체적인 법적의미는 다음과 같이 구분이 가능함

〈 법적 구분 〉

구 분	내 용
시정명령	시정명령은 행정법상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행정주체가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 행위 또는 부작위를 명하는 행위. 명령 또는 하명(下命)이라고도 함
과 징 금	행정법 상의 의무위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행정제재를 의미함
과 태 료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 행정기관이 질서위반행위에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
벌 금	행정형벌로서 중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사법절차에 따라 부과

◎ 시정명령

- ▶ IPTV사업자가 당초 허가받은 IPTV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이용자 보호 및 규제목적 달성이 가능함
- 우선, 업무처리절차가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임. 이는 불필요하게 해지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거나 가입절차상 고객정보 관련된 동의획득절차상 문제가 있는 등 절차개선을 위해 행정기관이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한 것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임. 이는 장애, 천재지변의 경우에 사업자의 신속한 서비스 복구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고객이 끊임없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측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임
 - 기타, 본 법 또는 본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임

- ▶ 한편, 진입규제를 위반하고 IPTV사업이나 IPTV 콘텐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즉시 사업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허가없이 IPTV 사업을 제공하거나 신고/등록/승인 없이 IPTV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나, 이를 형사처벌 절차에 회부하기에 앞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절차를 통해 시정을 도모하거나 혹은 진입규제를 수용하도록 행정지도가 가능하게 한 것
- ▶ 기타 금지행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통위가 해당 위반사업자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당해 조치에는 1)위반행위의 중지, 2)이용약관의 변경, 3)계약조항의 삭제 등 시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포함됨

제2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경영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용 중인 자기 보유설비의 사용 등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제한한 자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보유설비를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한 자
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의 의

- ▶ IPTV사업자가 본 법 중 중요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방통위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되는 이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 이는 대부분의 행정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시정명령 외에 벌칙 규정을 두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 벌 칙

- ▶ 벌칙조항은 분류상 행정형벌에 해당하고 일반 형법총칙이 적용되며 처벌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됨
- ▶ 형벌의 수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동시에 과할 수 없음
 - 형벌 적용 대상은, 1)허가없이 IPTV 사업 제공, 2)설비 동등제공의무 위반, 3)개인정보 유출, 4)사업정지명령 위반에 한정됨
- ▶ 동 규정은 양벌규정임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호의 벌금형을 과하게 됨(제27조제2항)
 - ※ 과태료와 달리 형벌은 대표자나 행위자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임. 따라서, 법인은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특별히 법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명문으로 양벌규정을 두어야 함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2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요금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자

-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에 관한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5.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6.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의 의

- ▶ IPTV사업자가 본 법 중 경미한 사항, 즉 불이행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초래하는 사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벌 칙

- ▶ 과태료는 분류상 행정질서벌로서 일반 형법총칙이 적용은 배제되며 처벌 절차는 방통위의 결정에 따름
 - 일반 벌금과의 구별은, 벌금은 형벌로서 법원에서 부과되는데 반해서,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해당 규제기관에서 부과된다는데 있음
- ▶ 과태료의 수준은 1천만원 이하에서 방통위가 결정함
 - 과태료 부과 대상은. 1)경쟁상황평가자료 미제출, 2)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절차 위반, 3)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4)사업 휴·폐지 미신고, 5)방통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임

위반내용	법률	처벌내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때	제24조제1항 제1호	허가취소
1년 이내 사업 미개시 또는 1년 이상 휴업	제24조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	허가취소 또는 매출액 2.0% 과징금
소유/겸영규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	제24조제1항 제3호/ 제25조제1항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매출액 1.5% 과징금
시장점유율규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	제24조제1항 제3호/ 제25조제1항	사업정지 3개월 또는 매출액 1.0% 과징금
업무처리절차가 이용자 이익 현저히 저해	제26조제1항 제1호	시정명령
사고 등의 처리 지연한 때	제26조제1항 제2호	시정명령
기타 이 법 또는 명령 위반한 때	제26조제1항 제3호	시정명령
허가받지 아니하고 IPTV 서비스 제공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1호	서비스 제공 중지 명령/ 2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등록/승인 받지 아니하고 콘텐츠사업을 한자	제26조제3항	서비스 제공 중지 명령
금지행위 위반한 자(법 제17조 제1항)	제26조제4항/ 제17조제2항	시정명령/ 매출액 2%이하 과징금
정당한 사유없이 설비제공 요청 거절	제27조제1항 제2호	2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설비제공 중단	제27조제1항 제3호	
정당한 사유없이 설비 차별적 제공	제27조제1항 제4호	
서비스 제공 및 설비제공 과정에서 획득한 개인정보를 공개한 자	제27조제1항 제4호	
사업정지 명령 위반한 자	제27조제1항 제4호	1천만원 과태료
경쟁상황평가자료 미제출	제28조제1항 제1호	
약관 미신고, 요금 미승인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	제28조제1항 제2호	
요금승인관련 자료 미제출	제28조제1항 제3호	5백만원
이용자 정보보호 미조치	제28조제1항 제4호	1천만원
사업의 휴/폐지 미신고	제28조제1항 제5호	5백만원
법 26조 시정명령 위반	제28조제1항 제6호	1천만원

참고자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시행령 2단 비교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제10조제1항제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란 「정보화촉 	<p>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진기본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광대역 통합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말한다.</p> <p>3.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p>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p> <p>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p> <p>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p> <p>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p> <p>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사업의 허가</p> <p>제4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p> <p>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허가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명,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콘텐츠 수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3. 재정 및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시설계획서(주요 시설의 임차 시는 임차 계획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능력 6.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7. 시설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8.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p>⑤ 삭제 <2008.2.29></p>	<p>제2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조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정관(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설립예정 또는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관련 서류(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p>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심사사항에 대한 배점은 별표1과같아</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⑥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⑦ 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절차,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제5조(허가기간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재허가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p> <p>제6조(사업권역)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 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요청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p> <p>②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제4조제1항</p>	<p>제3조(허가기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기간은 5년으로 한다.</p> <p>제4조(재허가)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재허가를 받으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법 제4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허가 신청서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재허가의 심사기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전 허가 당시의 사업계획, 허가조건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의 내용·횟수와 그 이행 여부 <p>제5조(전국 서비스 개시기간)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방송법」제12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모든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제한을 초과한 법인 3.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지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p> <p>③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p> <p>제8조(겸영금지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p> <p>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p> <p>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라디오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p>	<p>제6조(겸영금지 등)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p> <p>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중 그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말한다.</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할 수 없다.</p> <p>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제외한다)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분을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증권거래법」 제2조제20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을 제외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을 제외한다)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p> <p>제10조(초과소유 주주 등에 관한 제한 등) ①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한 경우 위반의 원</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한 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p> <p>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변경허가의 절차 및 심사 내용 등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공정경쟁의 보장 및 촉진</p> <p>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①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 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7조(변경허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합병 및 분할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이 경우 그 사업의 양수자는 법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3. 사업권역의 변경 <p>제8조(공정경쟁의 촉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②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p> <p>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9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개정 2008.2.29></p> <p>④ 평가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여야 한다.</p>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에게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p> <p>제9조(경쟁상황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경쟁상황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에 대한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3. 그 밖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공정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방송·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한 학과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방송·통신 또는 공정경쟁 관련 분야의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방송·통신 등 미디어 사업과 관련된 협회 또는 단체 등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⑤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절차·방법, 평가위원회의 설치·조직·업무·위원의 선임방법·위원의 임기 및 신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나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방송·통신 또는 공정경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p> <p>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④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p> <p>⑤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⑧평가위원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p> <p>⑨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제13조(시장점유율 제한 등) 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합산하여 「방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구역별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유선방</p>	<p>제10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 ① 평가위원회가 경쟁상황 평가를 하기 위하여 단위시장 또는 관련시장을 확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의 수요대체성 및 공급대체성 2.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지리적 범위 3. 구매력·협상력의 차이 또는 수요의 특수성 등 이용자의 특성 <p>② 평가위원회가 경쟁상황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단위시장 또는 관련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구조: 경쟁사업자의 수, 경쟁사업자 간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관계,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콘텐츠의 수급관계 등 2. 이용자의 대응력: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대체 서비스 또는 사업자 전환의 용이성 등 3. 시장성과: 사업자의 요금·품질의 수준, 수익성 등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행위: 요금·품질경쟁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5. 그 밖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단위시장 또는 관련시장의 상황 <p>③ 평가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조사·연구 및 통계분석 등의 업무를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1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사업 가입 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된 후 1년 이내에는 5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08.2.29></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p> <p>제14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자기 보유설비의 부족, 영업비밀의 보호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p> <p>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용 중인 자기 보유설비의 사용 등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p> <p>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자기 보유설비를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범위, 설비제공의 거절·중단·제한 사유, 설비제공의 방법·절차 및 설비 이용대가의 산정원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필요한 설비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비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그 설비를 직접 구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대체설비를 이용하게 될 경우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공정한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설비를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는 디지털가입자망 등 선로설비와 전주·관로·통신구 등 기반설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설비의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와 접속하는 설비가 기술기준이나 국가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2.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기술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하는 사업 운영에 현저한 손실이나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설비의 재설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p> <p>3.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p> <p>4.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할 여유설비 또는 여유용량이 부족한 경우</p> <p>5.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p> <p>6. 전기통신설비의 접근·이용을 요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설비개선을 위한 공사계획이나 설비 이전계획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p> <p>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p> <p>2.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기술적 장애</p> <p>3.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p> <p>4.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p> <p>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을 하려는 자(이하 “요청사업자”라 한다)는 그 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구간, 장소, 종류, 규격, 사용기간 및 용도 등을 서면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에 관한 이용요금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p>	<p>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그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제공할 수 있는 시기 등을 요청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6항 전단에 따라 요청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 요청일부터 45일 이내에 요청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⑧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이용대가는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원가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가는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감가상각비, 투자보수비 및 운영비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실비 등을 포함한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 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16조(이용자 보호)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서비스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취득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개별 이용자 정보의 부당한 제공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p> <p>제17조(금지행위)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4.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p> <p>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절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p> <p>6.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서비스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p> <p>7.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주, 관로, 통신구 등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 100분의 2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p> <p>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과징금)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매출액”이란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을 하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첫 날 현재 사업을 시작하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p> <p>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③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p> <p>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제14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p> <p>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①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 통신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인터넷 멀티미디어</p>	<p>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때</p> <p>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p> <p>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5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제16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대상)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 또는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 제2항의 신고, 등록 및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콘텐츠사업 발전시책 등) 정부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콘텐츠 간의 공정경쟁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마련 등 콘텐츠사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서 콘텐츠(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사용채널의 콘텐츠만 해당한다)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p>②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에 따라 허가·등록 또는 승인받은 것이 아닌 콘텐츠(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사용채널의 콘텐츠만 해당한다)를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하려는 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제17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명 2. 대표자명 3. 상품 또는 서비스명 4. 콘텐츠 공급 분야 5. 주된 사무소 및 주요 시설의 소재지 6. 납입자본금(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7.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8.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인 주식소유 현황 및 관련 증명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9. 다른 법률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만 해당한다)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받으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해 말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④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8조를 준용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8조(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 ①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 승인신청서에 적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의 승인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10조를 준용한다.</p> <p>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변경승인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17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제1항제4호 2. 해당 콘텐츠사업의 최대역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3.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제20조(콘텐츠 동등접근)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시한 경우(이하 "주요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주요방송프로그램의 계약 행위 등에 있어 시청자의 이익 및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주요방송프로그램을 고시함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p> <p>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① 인터</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9조(콘텐츠 동등접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하여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지 여부 2.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3.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접근·이용 또는 거래를 거절·중단 및 제한할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 <p>제20조(「방송법 시행령」의 준용) ① 인터넷</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직접사용 채널을 운용할 수 없다.</p> <p>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에 대하여는 「방송법」제32조, 제33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p> <p>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는 「방송법」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채널”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로 본다.</p> <p>④ 「방송법」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 제76조의3, 제76조의5,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78조의2는 콘텐츠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국내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 공급,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재송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p> <p>⑤ 재난방송에 대하여는 「방송법」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본다.</p>	<p>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p> <p>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규정(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54조를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가목 중 “70개 이상으로 할 것”은 “70개 이상으로 할 것(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전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단위의 수가 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볼 것 2.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볼 것 3.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마목 중 “100분의 20을 초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는 “100분의 20을 초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전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단위의 수가 70개 이상인 경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우에만 해당한다)로 볼 것</p> <p>4. 「방송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중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 목적을 지닌 채널”은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 목적을 지닌 채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만 해당한다)”로 볼 것</p> <p>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p> <p>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7조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의 비율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p> <p>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방송법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p> <p>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광고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광고의 허용범위 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p> <p>⑦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협찬고지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p> <p>⑧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22조(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제23조 (사업자의 출연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진흥 및 이용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방송법」 제36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귀속, 징수 및 배분비율,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재송신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본다.</p> <p>⑩ 외국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통한 국내 재송신 승인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 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각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본다.</p> <p>제21조(사업자의 출연)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방송법」 제36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허가받은 후 3년이 지날 때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발생한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재정 상태,</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제24조(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해당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 2.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3.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p>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과 사업 운영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p> <p>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을 부과하려면 출연금의 납부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밝힌 납부통지서를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납부기한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수납기관에 출연금을 내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제25조(과징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서 그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에 갈음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의 정지나 허가의 취소 사유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개정 2008.2.29〉</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p> <p>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시정명령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처리절차가 현저히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2. 사고 등에 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제23조(과징금)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p> <p>④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개정 2008.2.29〉</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한 자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이용약관의 변경, 계약조항의 삭제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벌칙</p> <p>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경영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용 중인 자기 보유설비의 사용 등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제한한 자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보유설비를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한 자 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②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요금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자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에 관한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p> <p>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p>	<p>제2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8849호,2008.1.17></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삭제 <2008.2.29></p> <p>③ 삭제 <2008.2.29></p> <p>④(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3항에 따른 법인이 「방송법」에 따른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 내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p> <p>⑤ 삭제 <2008.2.29></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p> <p>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p> <p>⑧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0968호,2008.8.12></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추천을”을 “허가”로,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허가 추천”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제6호를 같은 조 제4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 추천과 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허가 추천 및 허가”를 “허가”로 한다.</p> <p>제6조제1항 단서 중 “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p> <p>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본문·제3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2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p> <p>제12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위원장과 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로 한다.</p> <p>제20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p> <p>제22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p> <p>제23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방송발</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p>전기금과 「정보화촉진기본법」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한다.</p> <p>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 제1항, 제26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p> <p>제28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로 한다.</p> <p>부칙 제2항·제3항·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p> <p>㉠ 부터 ㉢ 까지 생략</p> <p>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p>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해설서 집필진

◎ 자문위원

소 속	직 위	성 명
방송통신위원회	팀 장	오 광 혁
방송통신위원회	팀 장	홍 진 배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최 우 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황 준 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남 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 장	고 순 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장 종 현
한국인터넷진흥원	팀 장	허 해 녕
KT	부 장	김 충 성
SK브로드밴드	과 장	이 태 용
LG데이콤	과 장	이 흥 렬

◎ 감 수

소 속	직 위	성 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강 태 욱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고 환 경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성 엽

본 해설서는 일반인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IPTV법 및 시행령 해설서

2009년 3월 일 인쇄

2009년 3월 일 발행

발 행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인 쇄 : (주) 서 등

비매품

